

비정부 기구 체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법적, 인권기구의 평가에 의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입안 위원회는 수많은 아동복지와 아동권리기구들이 제출한 초안의 개념과 용어들을 이용하였다.

조약이 국제법이 되는 과정: 시명, 비준, 가입(acceding)

일단 입안그룹들이 합의 안에 동의하면 그것은 유엔 총회에 제출되어 투표나 동의에 의한 채택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제적 문서의 채택은 그것이 국제법 문서가 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최초의, 종종 가장 용이한 단계이다. 총회의 국제적 공공포럼에서는 총회에서의 채택이 개별국가에는 아무런 구속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규범의 채택을 반대하는 국가는 별로 없다. 동의에 반대하거나 반대투표를 하는 것은 인권에 반대하는 국가로 두드러질 것이다. 이것을 외교적으로 생산적인 태도라고 보는 국가는 드물다.

어떤 조약이든지 그것이 서명국가들에게만 구속력을 지니고 국제적 규범으로서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최소한의 국가들이 그것에 동의해야 한다.

그 때 조차도 국제적 불만은 그 규범을 적용하기로 동의한 국가들에게만 효력을 지닌다.

한 국가는 조약에 공식적으로 동의함으로써 그 규범에 책임을 지고 그 내용을 결합시킬 것을 약속하게 된다. 그러한 동의는 두 개의 공식 단계나 모두 한번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다. 한 국가는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그것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이것은 대개 정부의 행정부가 맡게 된다. 조약의 비준은 대개 사법부나 법률 제정 부서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 협약의 비준은 조약 안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국내법으로 채택하겠다는 계약이다. 필요하다면 정부는 국내법이 조약에 조응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조치들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한 국가는 예비적 서명을 거치지 않고 조약을 채택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함으로써 곧바로 조약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러한 비준과 가입을 통해 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당사국이 된다.

규범들의 국내법적 수용은 국제 인권 조약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그것은 국내법과 정책들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 가능한 기준들을 세운다. 그것은 국내법들이 정교화 할 수 있는 잘 갖춰진 규범들과 정의, 심지어는 세세한 법적 용어까지 제공함으로써 각국이 그들의 국내법과 사법권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조한다.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시기

조약은 대개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고 작동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준, 혹은 가입

국가가 필요하다. 이 최소숫자는 대개 조약 자체에 정해져 있다. 그것은 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의 경우에는 20개 국가가 최소로 필요했다; 어떤 조약들은 40개 국가로 그 최소 수를 지정하기도 한다.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것은 조약 비준국이나 가입국가를 구속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식으로는 때로 조약에 비준한 다른 당사국에 의해서만 가능하지만 조약당사국에 반하는 공식 고발(complaints)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들은 문서의 어떤 특정 분구나 조항이 적용 불가능하거나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유보조항을 가지고 조약을 비준할 수도 있다. 몇몇 국가들은 실제로 특정조항들이 그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이유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정부들은 핵심 운용 조항이나 원칙들에 유보조항을 둔다. 그렇게 함으로써 겉으로는 조약을 채택하는 듯 하면서도 그 이행의도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요 조약들에는 그 이행을 검토하고 수행을 감시하며 조약의 조항들에 관한 불만을 청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기구(treaty bodies)"나 위원회들이 있다. 이 위원회들은 조약 당사국들이 지명한 사람들 중에서 임명된다. 대부분의 조약기구들은 UN사무총장을 통해서 매년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있다.

많은 조약들은 조약당사국들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이거나 혹은 그 이외의 조치들과 조약이 다루고 있든 사안들에 관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관련 위원회에 장기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들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공공이나 비정부기구로부터의 기여를 허용하거나 장려하기까지 한다. 조약기구들은 또한 비정부 소식통으로부터 직접 보고서나 자료를 제출 받기도 한다.

몇몇 조약들은 또한 조약 규정들은 위반하는 당사국에 대해 공식적 고발을 할 수 있는 세부 절차들을 명시해 놓기도 한다. 조약규범의 수행과 관련한 제소와 분쟁들을 검토하고 해결하는 과정도 또한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약의 다른 중요성

조약은 그것이 발효유무에 상관없이 많은 다른 가치들과 용도를 지닌다. 이것은 특히 자국내의 문제들이나 악습(abuse) 때문에 협약비준을 거부하는 나라들에서 더욱 그렇다.

많은 나라에서 국내법학은 그 나라가 특정 조약을 비준하거나 그에 가입하지 않

았을 때 조차도 법적 소송과 법정 절차에 국제 조약이 인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고문에 반대하는 협약처럼 협약의 존재 그 자체는 국제 포럼 장에서 그러한 관습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정보와 압력도구가 되어왔다. 국제규범들은 국내의 공공 혹은 언론 그리고 국회 논쟁에서 좀 더 나은 규범의 옹호자나 인권의 악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돋기도 하는 강력한 도덕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국제 규범들은 정부가 그 진세내용을 수용하기를 꺼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비준이나 가입을 반대할 때에도 그 내용의 일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한 지침서로서 때로는 효과적인 자극제로서 기능 한다.

국제규범들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집단이나 공동체로 조직하는데 유익할 수 있다. 이주자들과 같이 주변화되고 배제되고 많은 경우 힘을 앓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정의를 놓은 협약의 존재 자체는 그들이 존재하고, 인정받고 있으며 권리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것 자체도 매우 힘을 복돋울 수 있다. 그것은 영향을 받은 개개인들이 존엄성을 지지하고 복구시킬 수 있도록 돋는다. 그것은 그들의 처지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과 지지를 확인시킴으로써 조직화와 집단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권리의 지역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은 자립조직과 다른 연관 그룹, 영역들과 협조를 이루할 수 있는 접점이 될 수도 있다.

이주자의 권리를 촉진을 둘러싼 협력을 쌓는 것은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 조직들을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 요소였다. 그것은 매우 다양한 국적과 경험을 아우르는 지역적이고 국가적 수준의 이주노동자 조직을 모아 아시아에 이주노동자 포럼 형성을 쉽게 하였다. 그것은 바로 이주노동자의 권리캠페인이 이주자들에게 직접적인 관심과 자기방어의 공통 관심사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협약의 비준을 위한 캠페인은 국적, 언어, 문화, 그리고 사회계급과 같은 중대한 차이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즉각적이고도 실제적인 활동에 대한 선택을 제공한다. 그것은 또한 인권과 시민권, 노동조합과 작업장 기준의 보호에 관심 있는 국내 단체들, 종교 단체들 그리고 다른 단체들이 연대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제공한다.

제3부

1. 협약의 중요성과 내용

협약이 중요한 이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성원의 보호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새 시평을 열었다. 그것은 또한 단순히 현존하는 인권 법률을 특정 개인 범주에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 협약은 국제사회가 여성 이주노동자와 남성 이주노동자, 합법적 노동자와 비합법적 이주노동자, 내, 외국인간에 인권을 대우의 평등조항에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구상을 보여준다.

이 협약의 중요성은 다음 10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협약은 이주 노동자들이 국제경제에서 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인정한다. 이것은 수백만 개인들과 무시될 수 없는 수많은 국가들에 일련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아직 이주 노동자들은 국제사회에서 대개 보호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남아있다.

2. 오늘날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종종 그 출신 국가로부터 무시당하며, 개개인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들이 외국인 신분인 고용국가에서는 제한된 권리를 지닌다. 이 협약은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 구성원들을, 국제적 상황하에서 인권보호가 필요하고 그들의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그러한 것을 즐길 권리 부여받은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규정한다. 그것은 인권 법을 현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정부류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의 조항들은 인권보호조치를 약자의 위치에 놓인 다른 이주자들에게도 확대할 것이다.

3. 이 협약을 이주노동자에 관한 지금까지의 문서 중 가장 포괄적인 국제 협약이다. 그것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치우, 복지, 권리 그리고 관계국가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일련의 국제 규범을 제시한다. 관련 국가들에는 국제적 노동자의 이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송출국, 경유국, 수입국이 모두 포함된다. 상무간, 지역간 조약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국제적 사안을 다루기에는 불충분하다.

4. 국제 사회는 처음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를 이주자로 인정하는 이주노동자에 관한 국제적 정의를 내렸다. 이 협약은 또한 세계 모든 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 범주에 대한 정의도 내리고 있다.

5.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나 경제적 실세 이상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가족이 있는 사회적 실체이다. 따라서 이 협약은 그들이 가족 재상봉이 포함한 권리들을 가짐을 인정한다.

6. 협약은 모든 이주 노동자들이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이던 상황에 있건 간에 기본적인 인권을 부여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것은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하지만 합법적이고 인정된 지위를 가져야 함을 장려한다. 그것은 모든 노동자와 사용자가 관련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를 것을 장려한다.

7. 협약은 또한 고용국에서 외국인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어떤 상황하에서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다뤄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대우의 평등"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럼으로써 국적과 국경에 상관없는 인권의 불가분 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국적자는 그러나 내국인보다 많은 권리를 갖지 못한다.

8. 그것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시민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하려는 국가들이 특정지역에서는 부가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인권보호에 관한 국내적 기준이 업는 나라들에게 그 입법을 협약에 규정된 보편적 기준에 근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국은 그 영토 내로 어떤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그 거주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가에 있어 자율권을 낸다.

9. 대체적으로 협약은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전 이주과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을 없애고 예방하는 것을 추구한다. 특히, 그것은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비밀리에 모집하고 밀수입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불법적이고 밀입국상태에서 고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 마지막으로 협약은 그의 수행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국제 사회-주로 NGO와 개인들-로부터 중대한 참여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협약의 강조점들

범위와 정의들

* 협약은 어느 정도의 이주경험을 포함하는가?

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전 이주기간에 적용된다. 그것은 그들의 권리와 보호를 모든 단계로 확대한다. 준비, 모집, 출발, 그리고 이동; 고용국에서의 체류; 그리고 그들의 고국이나 영주국으로의 귀환과 재정착 (제1조)

* 이주노동자는 누구인가? 이주노동자는 다른 이주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모든 이주자들이 이주노동자는 아니다. 국제 협약상 최초로 이 협약은 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주노동자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정의는 광범위하게 이주노동자가 되려고 계획하고 있거나 나라밖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거나 또는 외국에서 일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포함한다.

협약은 "이주노동자"란 용어는 그/그녀 자신이 내국인이 아닌 곳에서 보수를 받게 되거나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서술한다(제2조). 각종 이주 형태가 특정사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난민, 한 국가의 고용인, 학생, 투자자 등등은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필요, 관심사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협약은 또한 이주노동자의 정의 안에 그 나름을 권리를 가진 이주노동자로서 여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인권법률을 남성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완전히 적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언급이 협약 전반에 나타나 있다.

* 모든 이주노동자는 똑같은가?

이주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일반적 지위에 더하여 협약은 현대 세계에서 이주노동자가 처한 복잡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변경 노동자(frontier worker)," "계절 노동자(seasonal worker)," "프로젝트에 묶인 노동자(project-tied worker)," "자율 고용된 노동자(self-employed worker)(제2조),"와 같은 이주노동자의 세부 범주들의 정의를 제시한다. "자율 고용된 노동자"라는 협약은 협약의 4부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다른 범주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권리를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 가족 구성원들이 협약에 포함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이주노동자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가?

인권 입법 상 한발 나아간 것으로서 협약은 이주노동자를 경제적 실체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총체로서 인식하고 이주노동자 가족의 재결합을 지지한다.

그것은 "가족구성원"을 "이주노동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적용되는 법에 의해 혼인에 상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련국가의 법에 의해 인정되는 부양가족으로 규정한다(제4조). 이 용어는 세계적으로 다른 형태의 가족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이 협약은 다양한 상황에서-특히 수입국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그 가족의 권리와 그의 보호를 열거하고 있다.

* 협약은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는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의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협약은 비차별 조항을 가지고 성, 인종, 언어, 종교, 정치적 신념, 국적, 나이, 경제적 위치, 재산, 결혼여부, 출생이자 다른 지위의 어떤 구분도 거부한다(제7조).

한 눈에 보는 협약

- 협약은 전문에 이은 9개 부문으로 나뉜 93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문에는 이주노동자 협약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 제1부: 범위와 정의 (제1조-6조)
- 제2부: 권리에 관한 비차별 (제7조)
- 제3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제8조-35조)
- 제4부: 합법적이거나 정규적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다른 권리 (제36조-56조)
- 제5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특정범주에 따른 적용 가능한 규정들 (제57조-63조)
- 제 6부: 국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과 관련한 건전하고, 평등하고 인간적이고 합법적인 조건의 촉진 (제64조-71조)
- 제7부: 협약의 적용 (제72조-78조)
- 제8부: 일반 조항 (제79조-84조)
- 제9부: 최종 조항 (제85조-93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

협약은 두 개의 표제 아래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제3부)과 이주노동자의 다른 권리(제4부). 인권은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지만 다른 권리는 합법적 상황하의 이주노동자에게만 적용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협약이 불법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불법노동자의 정당한 처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조영빈, 1].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본 협약이 이주 노동자만을 위한 새로운 인권을 독점, 배제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 협약의 제 3부 (Part 3)는,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담겨 있고 현재 많은 국가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여러 국제 인권 조약들(treaties)에 상세히 설명된, 기본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이것이 다시 반복되어야 하는가. 본 협약은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한 수많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비인간화 된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한다. 사실, 다른 기본 인권 조약의 바탕이 되는 규정들은 몇몇 나라에서 '시민' 또는 '거주민' 등의 용어와 함께 쓰이는데, 이는 많은 이주자들, 특히 변칙적, 불법적 (irregular) 상황에 있는 이주자들을 배제하면서 이용되고 있나.

기본적 자유권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이러한 근본적인 권리를 적용시키면서, 본 협약은 그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본국을 떠나고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제 1조). 본 협약은 '삶에의 권리' (Right to Life)(제 9조), '간접하고 비인간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처벌행위에 대한 금지' 그리고 '노예제나 강제 노동에 대한금지' 등을 재확인함으로써,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참고 견뎌야만 하는 비인간적인 생활조건과 노동환경, 신체적인 혹사 (그리고 성적유린) 등을 포함해 다룬다 (cover, 라는 단어 해석 불분명) (제 11조).

이주 노동자들은 또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제 12조).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 또한 지닌다 (제 13조). 그들의 재산은 임의로 압수될 수 없다 (제 15조).

정당한 법의 절차 (due process)

본 협약의 다음 조항들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법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16조 - 20조). 조사, 구속, 구치 등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법 (법원과 법관) 앞에서 그 국가의 자국민들과 동등

하다는 그들의 평등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들은 필요한 법률 전문가와 통역 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정보나 자료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들이 법정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들이 외국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인간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외국 노동자들에 대한 부조리한 추방은 금지된다 (제 22조).

사생활에 대한 권리

이주 노동자는 자신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지니며, 이 권리의 그 가족과 그들 모두의 의사 소통 영역에 걸쳐 해당된다.

해당국가의 국민들과의 평등권

이주 노동자들은 급료와 작업환경에 있어서 해당국가의 자국민들과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급료와 작업환경은: 조과작업시간, 노동시간, 주중휴무, 유급휴가, 안전, 건강 및 의료, 노동계약민요, 해당 직업을 위한 최소 연령 제한, 재택근무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한다.) (제 25조)

해당국가 국민들과의 평등권은 또한 사회 안전 혜택 (제 27조)과 응급 진료혜택(제 28조) 등에도 적용된다.

급료에 대한 사국으로의 송금

고용주와의 계약을 끝마쳤을 때, 이주 노동자들은 그들의 개인 사유물, 소지품과 함께 그들의 급료와 지축금 등을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정보에 대한 권리

이주 노동자들은 당시의 협약과 그들의 입국 허가 조건 등에 의해 규정된 권리에 관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이를 들을 권리가 있다. 이런 정보는 무료로 이주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 33조)

학습적이나 정규직 상황에 지원 이주 노동자와 가족들의 기타 권리

본 협약은 합법적인 상태에 있는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기타 권리를 밝혀둠으로써 불법적인 노동력의 이주를 줄이고자 한다. 합법적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향상되는 것은 외국 노동 시장에 합법적으로 뛰어들고자 하는 이주 노동자를 찾는 고용주를 고무할 것이다.

일시적인, 또는 단기적인 경기에 대한 권리

이주 노동자들은 집안 사정과 이무를 이유로 세류나 근로허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시적 혹은 단기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주 이전의 자유

그들은 그들이 고용된 그 해당국가의 영토 내에서 자유로이 이주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살기 원하는 곳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 직업, 사회 복지 제도 등에 대한 접근 가능에 있어서 해당국민과의 평등권

제 25조에 언급된 영역 이외에도,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 있어서 그가 고용된 해당국가의 자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교육, 직업안내 및 취업알선 서비스, 직업훈련, 직업 재훈련, 주거관련 서비스 및 사회 주거관련 사업, 집세 등과 관련한 부당한 피해로부터의 보호, 사회복지 및 의료제도, 협동조합 내지는 자영업, - 이상의 영역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권리, 문화적인 삶을 위한 문화 활동에의 접근(access)과 참여에 있어서의 권리(제 43조). 이주 노동자의 가족들 또한 이상에 열거된 영역에 있어서 해당국 자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제 45조)

이주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해고로부터의 보호, 실업에 따른 수당 내지는 혜택, 실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안된 공공 사업 등에 대한 접근 가능; 그리고 직장을 잃거나 기타 다른 보수 받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다른 고용직으로의 이직 가능 (제 54호)

고용 계약 위반

고용주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주 노동자는 이를 고용당국의 해당관청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54조 (d)). 그리고 그들은 자국민의 경우와 동등하게 다뤄져야 할 권리와, 법이 정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 법관(tribunal)으로부터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들을 권리를 지닌다. (제 18조 1항)

불법 체류 노동자의 권리

본 협약은 '이주와 관련된 인간의 문제는 불법이주의 경우에 있어서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정, 확인한다. 본 협약은 또한 '비밀리에 행해지는 외국인노동자의 이주와 그들에 대한 불법 거래를 막고 없애는 동시에, 이주 노동자들의 근본

적인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한 합당한 행위를 장려할 필요를 인정한다. (협약전문)
불법 혹은 비밀리에 행해지는 이주 노동자의 이주 행위를 찾아내어 근절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런 이주를 조직, 조작하는 역할을 한 이들과 불법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주들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본 협약은 불법적인 노동력의 이주를 막고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련 국가들이 타국이나 관련국으로의 이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에 대항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제 68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undocumented (불법) 이주 노동자의 근본적인 권리는 본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다(제 8-35 조).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

다른 모든 국제조약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의 성공적인 적용은 관련국가의 정치적인 의지에 달려있다. UN기구는 가입국의 영토 내에서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UN체제는 UN인권위원회와 각각의 조직기구와 같이 다만 규범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일단 한 국가가 협약을 비준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조항들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우선 조항들이 국내에서 구속력을 지니기 위해 국내법에 통합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혹은 상호 협력하여 송출국과 수입국 모두가 실질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비차별

송출국과 수입국 모두는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그들의 영토와 관할권내에서 협약에 다뤄진 권리를 누리게 함에 있어서 비차별적이어야 한다(제7조). 비차별은 이주 노동자의 신념, 나이, 경제적 지위, 재산의 유무 등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의 성별, 인종, 국적, 피부색, 언어, 종교에까지 확대된다.

국제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련한 건전하고 공평하고, 인간적이고 법적인 조건의 촉진

관련 국가들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삶과 작업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서로 협의, 협력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지역 공동체로의 이주로 인한 충격뿐 아니라, 그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그리고 다른 욕구들도 고려되어야 한다(제64조).

관련 국가들이 다음의 적절한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 이주 정책의 수립과 이행
- 관련국 주무관청 간의 정보, 상담, 그리고 협력의 교환

- 이주에 관한 정책, 법률에 대하여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 이주자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다른 요구를 충족시킬 적절한 영사업무의 제공

- 관공서 또는 관련 국가의 기구에 의하거나 승인, 허가, 감독을 받는 사설기관, 고용주들과 그들의 대행업체를 통한 이주 노동자 채용 규제 (제65조, 66조)

관련국들은 다음과 같이 불법적이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노동 이동을 예방하고 근절함에 있어 협의, 협력해야 한다.

- 이주, 이민에 관계되는 잘못된 정보의 유포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함
- 불법 이주 노동을 탐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고용주를 포함하여 불법적인 이주 노동에 책임이 있는 사람과 기관들에 제재를 가해야 함

(제68조)

관련국들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안전, 건강,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기준에 부합하는 일과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인에게 적용되는 만큼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70조).

정보의 제공 이주노동자가 협약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면 그들은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모든 다른 권리들은 적절하고 관련성 있으며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관한 권리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송출국과 수입국은 협약에 기인한 권리에 관한 정보를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제33조). 게다가 송출국과 수입국은 이주노동자의 출발 또는 수입국으로의 입국 전에 이주노동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들의 입국, 체류, 고용이 적용되는 조건들; 수입국 법률 하에서의 권리와 의무; 수입국에서 요구 조건들을 수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들; 이런 조건들의 변동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주무 관청(37조 참조).

관련 정보를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료이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또한 이주 과정에 연관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포되어야 한다. 고용주들, 노동조합, 다른 기관들과 조직.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

관련 국가들은 특별한 요구, 염원, 이주노동자의 의무를 고려할 목적으로 기관들을 설립하고 이런 기관들이 그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41조).

송금, 세금과 세관 면세

관련 국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소득과 예금의 본국으로의 송금을 허가하고 용이

하게 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자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 이상을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과세 공제와 세금 할인에 관해 관련국의 자국민과 같이 형평성을 누린다. 국가들은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제48조).

관련 국가들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세관의 세금, 그들의 개인적, 가구의 재산에 대한 세금, 그리고 고용국에 이의이 되는 활동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제46조).

송출국에 한정된 일부

노동자의 이민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본국 출, 입국이 허가되어야 한다(제8조).

출국 전 정보

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고용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들은 그들의 입국, 체류, 고용뿐 아니라 다른 필요조건들에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에 대해 완전히 알아야 한다(제37조).

이주자의 정치적 권리 행사

본국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본국에서 일어나는 공무와 투표에 참가하고 그들이 선거에서 선출되는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제41조).

제한한 영사업무의 세부

송출국들은 그들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다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영사와 다른 업무를 제공해야 한다(제65조 2항)

고용 규제

해외 고용을 위한 노동자의 채용은 그것을 공공회사나 송출국의 기구에 제한함으로써 규제되어야 한다. 대행업체, 고용주들과 그들의 대행인들에 의한 고용은 승인, 허가, 감독 받아야 한다(제66조).

이주노동자의 재정착

불법 이주자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합법적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본국은 그들의 재정착과 사회, 문화적 재통합을 위해 적합한 경제적 환경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67조).

고용국에 한정된 일부

개인의 자유와 안전

체포되거나 감금된 이들을 포함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민간인, 공무원, 단체 또는 기관들에 의한 폭력과 다른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제16,17조).

작업과 생활환경

이주 노동자의 생활환경은 안전, 건강, 인간 존엄성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제70조).

재산 몫수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임의로 그들의 재산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들의 재산이 고용국의 법률에 의해 몫수된다면 그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제15조).

자국민과의 동등한 지위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법률과 법정재판에 있어서 고용국 자국민과 같은 형평성을 누려야 한다(제18조). 자국민과의 평등은 급료, 작업환경, 예를 들면 시간외 노동, 근로 시간, 주휴, 유급휴가, 안전, 계약의 종료(제25조) 뿐만 아니라 교육 기회, 직업훈련, 지도와 배치, 사회적 주택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택공급, 사회적 건강 서비스(제 43조)사회 보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불법 노동자를 포함한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도 또한 취학 전 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제30조).

노동 조합 활동

고용국들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다른 권리의 보호를 위해 노조와 협회에 가입하거나 그것을 형성하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제26조).

개인적 시유의 보호

고용국들은 이주 노동자의 신분 증명서, 근로와 주거 허가증이 인가 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몰수되거나 파기되니 않으며 그들의 여권이 파기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제24조).

고용국가들은 가족의 화답을 위하여 이주 노동자의 가족들이 이주노동자와 재결합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제44조).

협약의 국가 적용

보고

관련 국가들은 협약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그들이 협약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다른 조치들에 관한 보고서를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후 위원회가 요구할 때마다 혹은 매 5년에 한번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제73조).

이주 노동자들에게 권리보장을 강요하지 않기

관련 국가들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협약에서 기인하는 이 권리들을 포기하거나 버리라고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제82조). 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들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그러한 권리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

제4부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의 촉진

실제적인 견지에서 협약을 촉진시키는 것은 여러 차원이 있다. 물론, 그 하나는 정부기관의 비준이나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시작일 뿐

이다. 일단 협약이 비준되면, 그것의 법적인 기준들은 국가의, 때때로 주나 도, 그리고 지방의 법률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법률 혹은 법은 실행되어질 필요가 있고, 이러한 실행은 감시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 위에, 보고(서)가 실행과 승낙에 관한 국제조약기구에 제출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이것은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그러나 이것은 한번에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그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협약의 비준

협약의 비준을 구함에 있어서의 첫 번째 문제들 중 하나는 그것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민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조차도 협약의 존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고, 심지어 그 실체와 중요성에 대해 무지하다. 인식의 제고는 협약의 옹호와 연계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국가무대(배경?)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은 각 국가에서 협약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의 몇몇 핵심 요소이다.

연대의 형성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캠페인은 어느 나라에서나 연대형성의 중요한 기회이다. 정치적 상황(조건)에 의존한다면, 그러한 연대는 극도로 광범위하거나, 적당히 그러할 것이다.

왜 연대를 형성하는가?

* 정치적 지지와 영향력

실질적인 연대는 이민자 공동체를 넘어선 폭넓은 정치적 지지의 증거이다. 그것은 절차와 신뢰의 이미지를 고양하며, 협약의 옹호가 정부기구들과 공식적인 제창(촉진)의 또 다른 단계로 옮겨갈 때, 필요로 되어지는 활동적인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지지와 매개체를 제공한다.

* 자체 관심(self interest)

이민자들보다 다른 영역들이 협약을 지지함에 있어서私利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영역들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다. 캠페인은 그 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성단체와 노동조합은 그 협약에 분명한 관계를 가진 명백한 조직들이다. 그러나 지방정부기구들 같은 다른 조직들 또한 협약과 그 비준을 지지할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른 이슈에 대한 나쁜 조직이나 연대는 그들 자신의 활동의 프로그램 내에서 협약의 옹호를 반영하는데 관심이 있을 것이다.

* 공공 인식

협약에 관한 지식과 그것에 대한 지지는 대체로 단계적, 섹터별로 형성될 것이다. 공공 인식을 중대하는 하나의 방법은 핵심단체와 출판활동, 회의 등을 통해 인식형 성에 특정한 청중을 제공하는 운동에 접근하는 것이다.

* 재정 지원

연대는 기금마련에 하나의 수단을 제공한다. 어떤 연대 구성원들은 직원시간(staff time), 복사, 전화, 여행경비, 공급 등과 같은 비금전적인 형태의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연대를 위한 목표나제(시의, 시방, 그리고 국가적 차원)

- * 이민자와 이주자 권리 조직들, 이민자 협회, 그리고 이민자와 일하는 기관
- * 노동조합, 노동협회, 고용자 조직, 여성 조직
- * 종교조직: 모든 종교와 종파, 선직자, 신도 협회, 제도화된 기구와 영역(분야)
- * 학계대표와 이민자 학생단체, 법학도, 학생기구협회를 포함한 학생조직
- * 인권 프로젝트 팀과 위원회를 포함한 인권조직 들
- * 시민단체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조직
- * 법적인 기구들
- * 다른 사회적 경제적 정의 모임(단체): 몇몇 예로, 환경, 발전과 식량정책, 빈곤, 사회복지, 외교정책 등을 걱정하는 단체들이 중요한 지지자가 될 수 있다.

연대형성을 위한 예제:

연대로서 캠페인은 기자들을 포함하기 위한 다음의 예들의 일부나 전부를 포함할 수 있다.

국가 캠페인 연대 혹은 위원회: 행동계획에 동의하고 협의하는 리더십 체제(구조)의 어떤 형태를 포함한다.

캠페인 자문 위원회: 중요한 인물들이나 캠페인을 지지하는 중요한 단체의 대표를 포함하는 기구는 활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그 노력에 그들의 이름을 빌려주려 한다.

지지자 리스트: 그 협약을 지지하는 모든 개인들(정보를 받고, 어떤 단계에서 그것을 지지하도록 요청되는 사람들)과 조직들의 기구

임(작업)의 내용

연대, 위원회, 동맹은 국가적인 캠페인을 촉진시키는 기본적인 매체이다. 그것들

은 인식과 지지(옹호)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활동의 일반적인 범주는 다음을 포함한다.

- 공공 교육과 인식
- 미디어에 알리는 정보활동
- 조직자와 지지자의 훈련
- 제도적인 지지 형성
- 지지를 인도하기 또는 정부관료 로비

이 분야들의 각각은 특정한 임무를 필요로 한다. 대부분은 특정화된 기술에 대한 drawing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술들의 다수는 연대 구성조직들 안에서 이용하기 쉽다. 많은 캠페인의 경험은 일의 각 측면에 대해 합리적으로 전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재정 지원, 유효한 결과, 의도된 결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력 그 자체를 상쇄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다음 내용들은 각 영역별로 활동을 제안한다.

공공 교육, 인식 형성, outreach

- * 지역 언어로 국제적인 캠페인에서 제공하는 기본 교육, 팜플렛, 소책자, 포스터를 복제하거나 새로운 것을 만든다.
- * 국가적 상황과 지지자들에게 적합한 자료를 개획한다. 예를 들면, 협약과 같은 관계에 있는 현행 법과 정책을 비판하는 교육적 자료
- * 모든 지지자들에게 보내고 outreach의 자료의 일부로 쓰이게 하기 위해 비준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진전을 알릴 /분 아니라 협약에 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하는 정기 책자를 발간한다.
- * 월드 와이드 웹과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주요국이나 국제적인 사이트에 대한 연결과 더불어 비준캠페인에 대한 웹페이지를 만든다. 사람들이 그들의 지지를 보낼 수 있는 형식을 제공한다.
- * 비준에 대한 요구는 해마다 일어나는 사건, 프로그램, 집회 등을 포함하여 이주자 권리 옹호자들의 현재 계획, 활동과 일치가 되어야 한다. 비준에 대한 요구는 매년 열리는 회의, 소식지, 집회와 같은 연대 구성원 단체들의 계획과 정규활동에 반영시킨다. 그리고 다른 조직들도 그와 같이 하도록 고무시킨다.
- * 모든 기관의 연차회의, 집회, 비상회의 장에 협약 캠페인에 대한 정보 제공처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 다양한 청중들에게 협약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 걸친 인물들로 연사단을 구성한다.

* 협약의 비준은 행동수준과 같이 일련의 공공 사건과 미디어의 활동을 포함하는 집중적 교육캠페인을 위한 중심점이 될 수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주자의 주 또는 이주자의 날이 이미 선포되었다. 유사한 제안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다.

* 영화 상영, 미술 혹은 포스터 전시회, 눈에 뛰는 전시장이나 빌딩 로비에 전시를 기획한다.

* 이주자 단체들이 벌이는 영화, 춤, 음악, 미술 발표회를 지원한다.

미디어 보도의 확장

대중 뉴스와 정보 매체와 작업하는 것은 세련되고 도전적인 일로 발전되어 왔다. 대인자리 금지 캠페인에서와 같은 노력은 전문적이고, 잘 조직되고 잘 알리도록 하는 접근법이 주요 매체에 광범위한 보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코 작지 않은 전문화된 잡지들,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NGO의 방송채널과 같은 접근해야 할 많은 매체들이 있다.

몇 가지 고려할만한 세부적인 제언들

* 해당 국가의 매체 이해관계와 접근에 적합한 협약에 관한 배경 자료를 준비한다.

* 구체적인 신문, 잡지,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에 맞게 준비된 브리핑 서류, 포괄적인 자료집을 발신시킨다.

* 해당 국가의 다른 지역에서 지역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델 뉴스를 준비한다.

* 분명하고 가능하다면 저널리스트들이 언급하는 잘 알려진 대변인들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이것은 특히 라디오와 텔레비전 매체에 있어 중요한데 이는 이 매체들이 지루한 목소리나 시각자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미디어에 전해질 수 있는 특집기사나 삽입기사를 준비한다.

* 적절한 시기에 핵심언론에 지지자들의 명단이나 협약의 비준을 요청하는 광고를 내기도 한다. 적절한 시기에 예를 들면 의회에서 법률이 심의될 때-비준을 지지하는 개인과 조직들의 명단과 협약의 비준을 요구하는 신문 광고를 작성한다. 몇몇 국가에서 전면 혹은 반면 광고를 제재하는 비용은 각 지지자들에게 전체금액의 일부를

할당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조직자들과 옹호자들의 훈련

캠페인 활동에 대한 효과적, 전문적 접근을 발전시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 지역단위, 국가단위 활동가들의 능력을 키우는 것은 캠페인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캠페인 활동가들을 위한 이 안내서는 그런 훈련에 기여한다.

그 외 다른 요소들은 다음에 나타난다.

* 한 번 혹은 정기적 능력 향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것들은 관련 있는 각 조직의 대표를 끌어오기 위해 혹은 특정 기술을 가진 선발된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해 조직될 수 있다. 지역적, 국가적 접근에 더하여 지역 내에서 혹은 인접 국가들간의 국제적 차원에서 그간 활동의 준비를 고려해야 한다. 국제적인 캠페인은 그러한 훈련을 위해 자료와 인적자원 모두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 연대 구성원들과 협약에 관심 있는 다른 모임들에 훈련을 제공한다.

제도적 지지의 형성

협약과 캠페인의 공식적 지지를 촉진시키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고 인식을 고양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선택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 정부기구, 기관 혹은 모든 캠페인 회원 단체의 종회가 협약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도록 요청한다. 이 문제가 알려질 수 있도록 결의안을 소개하고 토론한다.

* 협약과 캠페인 지지자들의 명단을 늘리도록 노력한다. 보다 넓은 관심사를 형성하고 정부에 지지의 폭과 깊이를 알리기 위해 그 명단에 다른 부문에 여론 주도층을 포함시키는 것이 종종 유리하다.

* 지역과 지방 정부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과 기관들로부터 세부적인 지지 결의를 구한다. 그리고 그러한 결의가 적합한 정부기구에 전달되도록 한다.

* 이주자 상황에 대한 지방 공청회에서 협약을 중점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캠페인 연대가 개최하거나 지방의 공적 기구의 후원 하에 열릴 수 있다. 공청회는 협약의 조항을 사용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런 다음 정부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국가의 지지

국제 조약의 비준에 관한 각 국가의 특정 요구사항과 관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동 인권 협약과 대인 권리 반대 운동과 같이 다른 UN기구들의 비준을 촉진시

키는 데 중요했던 운동과 조직은 이러한 견지에서 유용한 교훈이 될 수 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비준과정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국민의 지지와 정책 입안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광범위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므로 그 가능성은 요원하다. 그럼에도 각 나라에서 특히 비준의 주요 목표가 되는 나라들에서 협약지지자들은 정치적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적절한 정부 대포들과 정치인들과 함께 식간 있고 영향력 있는 국민들에 의한 보나 끊고 성공적인 '조용한' 캠페인은 소수 국가들에서만 가능 할 것이다. 이는 관세장부, 행정, 입법부, 특히 외무, 법무, 내무부 그리고 노동 사무소와 접촉을 갖고 문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것은 국교(national church), 노동 조합, 경영인들 그리고 중요한 직책에 있는 정부 관료와 같은 영향력 있는 지지자들 사이의 모임을 조직, 준비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준을 위한 계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협약에 서명하는 것이 국가적 협의사항에 비준을 옮겨놓기 위한 중간 단계인 것이다. 이것은 폭넓은 국민의 압력과 특정한 정치적 흐름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촉구될 수 있다.

협약이 비준 고려의 단계에 있을 때 캠페인 정책을 오래 끌 수 있는 각 단계에 정책 수립자들의 구체적인 시지를 얻을 수 있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다.

비준을 넘어

이주 노동자에 관한 협약 캠페인은 이주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을 고양시키는 주요 접근법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단지 하나가 아니며 해당국가가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끝은 아니다.

[활동해야 할 다른 주요 영역들은 다음과 같다.]

- 이주자 권리의 침해를 확인하고 법적인 구제책과 다른 구제책을 찾기 위해 감시 과정을 수립하는 것(해당국에서 협약의 비준유무에 관계없이)
- 국내 보고에 관한 자료를 국제 조약기구에 기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 별도의 비정부 보고를 위의 기구에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감시

국가 캠페인 위원회의 중요한 기능은 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강화하고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이주자 권리의 침해를 실제로 감시하고 서류화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 캠페인 위원회 내에 감시 팀을 만들도록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내의 시민권,

인권, 법률기구에 감시 과정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감시는 침해사건을 확인하고 주의 깊게 서류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또한 권리의 침해와 가해자를 제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상하는 것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현행 법률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한 검토는 또한 어디에 틈새가 있는지를 밝혀줄 것인데 그런 틈새는 협약의 기준이 이행된다면 매우 질 것이다.

감시 과정은 정부에 이주자에 관한 협약이 왜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들의 본질과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믿을 만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조약 기구에 대한 국가 보고서

오늘날 대부분의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는 하나 혹은 여러 주요 국제 인권기구의 당사국이다. 이 조약들의 대부분은 실행을 감시 검토하기 위해 조약기구들을 설립하였다. 당사국은 이를 조약기구에 정기적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데 이 과정은 지역의 우선 순위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권옹호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조약 기구들, 그리고 거기에 제출된 보고서는 좌중식으로 볼 수 있고 공개되며, 개별 국가의 행위가 검사되는 국제적 연단이다. 국내의 침해 사례가 노출될 때 부정적인 국제 이미지와 평판을 무시하거나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어려운 환경이 국제적으로 검토될 때 국내의 지지 노력은 보완되고 정부에 개선을 종용하는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주요 인권 조항의 다수는 그것들이 명백히 지정하고 있는 가에 상관없이 이주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과 아동의 처우의 경우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이주자의 인권 상황은 조약 기구에의 국가보고서의 준비도 포함시켜야 한다. 어떤 경우 이런 보고를 준비하는 데 책임이 있는 정부 부서는 비정부기구로부터 정보, 자료, 논평에 개방적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가 인권사무소-대체로 정부에 연관된-혹은 외무부내에 보고서의 준비를 맡은 부서가 책임을 맡는다. 우선 어디에 보고서가 모아지고 누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외부의 기고가 받아들여지는가의 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는 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공식적 정부보고서에 비정부 기구의 기여가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비정부기구가 정보와 보고서를 조약기구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그 뿐만 아니라 잘 정리되고 준비된 대안적인 보고서는 국내 인식을 높이고 지지를 넓히는 대-예를 들면 국회의원들로부터- 아

주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국제적 대도위 그 외 시기

상호 연관된 이 세상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빌효되는 것과 같은 성공은 국제적 협력, 조정 그리고 지지에 달려있다. 국가적 캠페인이 발달할수록 다른 것들로부터 배우고 공유하는 것이 많아질 것이다. 지지가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다면 정부에도 영향을 주고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주자의 권리 침해의 공개가 유엔 인권위원회와 같은 국제 포럼 장에서 이뤄진다면 구제책을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고려는 국가적 캠페인 계획이 지역들과 세계 속에서 조정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점점 더 증가하는 이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벤트와 포럼들의 조직을 가직옴에 따라 그들을 중 어떤 것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각 지역의 캠페인과 어떤 형태로든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국제 회의나 유엔기구에 지역에서 대표를 파견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NGOs 활동

이 부분에서는 아시아 지역 이주 노동자문제에 대한 현황 흐름등을 각 종 국제회의 자료 및 국제 기구의 보고서 그리고 관련 기사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태 파악 및 전망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수의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력 송출도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이 부분은 해외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사점을 얻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글은 MIGRANT NEWS로서 미국의 유럽-독일 연구재단과 버클리 대학교의 연구소가 지원하는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MIGRANT NEWS를 실었다. 이는 매달 한달 동안의 이주노동 관련 소식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역별, 국가별로

정리해서 실고 있다. 98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소식을 정리해서 실었다.

두 번째 글은 아시아 국가별 이주민 현황개요 및 관련 기사이다. 이주민을 송출하거나 받아들이고 있는 아시아 각 국가의 이주민 현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 번째 글은 이주노동자 관련 국제 보고서이다. 홍콩, 일본,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대한 AMY 98'(ASIA MIGRANT YEARBOOK 1998)을 실었으며, 일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고서를 실었다.

네 번째 글은 AMC(ASIA MIGRANT CENTRE) 사무국장 REX VARONA씨의 '아시아 위기가 이주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글로서 가장 최근의 전체 상황을 훑어 볼 수 있으며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이주노동자 관련 영향을 구체적으로 짚어 볼 수 있다.

- 번역; 노승영, 강민정, 전종희, 김주영, 정혜원

1/ Migrants News

유럽

1998년 5월

EU에서의 이주실태

매년 대략적으로 백만명의 비유럽지역 외국인들이 EU지역내로 입국하여, 대개는 이미 EU에 정착한 가족과 합류하거나 망명을 요청하고 있다.

1985년에서 1995년의 기간동안에 최대의 이주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국가는 독일(2백40만명), 스웨덴, 네델란드, 프랑스 등이다. 1991년 ILO(세계노동기구)는 EU지역에 대략 260만명의 불법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분야에 정통한 소식에 의하면 현재 대략 500만명의 불법외국인이 있으며, 이 숫자는 매년 15만명에서 30만명 가량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1997년 6월 암스텔담에서 조인된 EU 협정의 비준후 5년이 지난 지금,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이주에 관한 전유럽 법률제출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독일은 1998년 4월 암스텔담 협정을 비준한 첫 번째 국가이며, 덴마크는 1998년 5월 암스텔담 협정 비준여부에 관한 국민투표를 할 예정이다.) 전 유럽지역에 효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사항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한다. 이는 예를 들어 EU의 한 국가에서 살면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외국인은 EU 지역 전역에서 직장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률안이 효력을 발생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것을 의미한다.

1998년 3월 31일 오스트리아의 이탈리아는 Schengen 협정의 정회원국이 되었으며, 내무성장관 Giorgio Napolitano는 "이탈리아는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이주와 모든 형태의 범죄자의 입국을 막기 위해서 육상, 해상 모두에서 국경검문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3월에는 런던을 목적지로 되어 있는 항공권을 가진 암만발 Alitalia 항공편을 이용해 이탈리아에 입국한 56명의 Kosovans인들이 이탈리아 경찰 당국에 의해 런던으로의 출국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영국당국은 이들이 적절한 입국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행기에 내려 망명을 요청하는 것을 막고서 이탈리아로 되돌아 갈 것을 명령했다. Alitalia 항공사 측은 이들이 이탈리아 경찰당국이 런던으로 데려갈 것을 명한 것이라고 하며 항의하고 나섰다. 이탈리아와 영국을 당사자로 하는 Dublin 협약에 의하면 망명요청자는 그들의 안전하게 도착하는 첫 번째 EU 국가가 이들을 처리해야 한다. 이탈리아에는 백만명의 등록 외국인이 있으며, 이외에 백만명의 불법 외국인이 있다. Schengen 협약의 정회원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포루투갈 등이며,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은 곧 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독일 : 보스니아, 정치

보스니아인

1990년대 초 대략 34만명의 보스니아 인들이 독일로 이주를 했으며, 현재 22만명이 남아 있어 보스니아인들의 귀국율을 35% 가량이 된다. 대부분의 보스니아 인들은 독일 내의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 "tolerated"(TPS)²⁾ 지위를 갖는 외국인보호체계내에서 독일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보스니아인에 대한 주택 식료품제공비로 연간 17억불을 지출해야 한다.

주 및 지방 정부가 연방정부가 배당한 보스니아인 보호를 위해 재정을 부담한다는 것과 주정부가 보스니아인들과 다른국가의 외국인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은 보스니아인들이 본국으로 재송환되는 방식에서 차이를 드러내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와 시들은 보스니아인들의 출국비와 재입국 보스니아인들의 수용을 위해서 보스니아 역사회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800여명의 보스니아 이슬람교도들에게 주거를 제공한 90,000명 가량의 한 독일 지역에서는 세르비아인들이 통치하고 있는 보스니아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이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61개의 이동식 주택을 제공했다.

정치

2) 폴레랑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홍세화 지음, 창작과 비평사. P.288 보른.을 보시면 폴레랑스에 대한 간단한 이해에 도움이 되시니 참조바랍니다.

독일 국민연합(Deutschen Volksunion)은 지난 4월 27일 Sachsen-Auhalt의 동부독일 주선거에서 12%를 득표했으며, 반면에 CDU의 득표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국민연합은 민족주의와 반외국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화당(Republikaner Party)은 1989년 유럽의회를 위한 국민투표에서 7%를 획득했다.

Kanther내무장관은 모든 망명요청자와 체포된 불법외국인들의 지문채취를 포함하는 EuroDat라는 EU지문날인제도를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Kanther장관에 의하면,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Schengenland로 입국한 Kurds인들을 독일이 이탈리아로 돌려보낼 수 있으며, 그리고는 이들이 독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1998년 3월 전 서독 지역의 실업율은 10%가 감소한 반면, 전 동독지역은 21%가 증가하여 독일 전체의 실업율은 12%를 나타내고 있다. IG-Bau로 대표되는 84만명의 건설노동자들은 4%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슈피겔(A Der Spiegel)조사에 따르면, 전 동독지역 주민의 65%가 독일내의 외국인이 많다고 보고있으며, 이들 외국인이 독일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48%에 이르며, 14%는 현 정부보다는 독재가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또한 슈피겔지는 이집트, 쿠바, 남부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하여 Bonn에 위치한 대다수의 제3세계 외교관들이 현재 독일 수도가 내년에 베를린으로 옮겨졌을 경우 자신들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했다.

1998년 4월 22일 일자 Wall Street Journal. Neil King 기자. "Movable East German Mayor Finds Unusual Solution for Refugee Problem"

1998년 4월 12일 Chicago Tribune, Ray Moseley 기자, "반외국인 감정, 동부독일 지역의 폭력 증가"

프랑스 : 새로 제정된 법률

프랑스의 이주법에 관한 최종안이 1998년 4월 8일 통과되었다. 이에 관한 의회표결로 집권좌파연합은 양분되었다. 연합정부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회당은 이 새로운 법안을 찬성하고 있는 반면, 공산당과 녹색당은 본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

이 법률은 프랑스내에서 외국인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가 최소 5년간 프랑스에서 거주한 경우 18세가 되었을 때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13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프랑스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프랑스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에게 결혼 후 12개월 후 귀화를 허용하고 있다.

이주논쟁에서 프랑스 정부는 불법외국인을 합법화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프랑스 내의 14만명의 가량의 불법외국인들이 죠스팽 사회당정부가 부여한 합법화 조치에 지원을 했다.

1998년 3월 1일까지 프랑스 정부는 합법지위승인 지원자 62,000명을 심사하여 이 중 32,300명을 승인했으며, 30,100명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거부된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추방되었다. (또다른 보도에 의하면 55,000여명이 승인되고, 40,000여명이 추방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몇몇 경우에는 추방에 직면한 외국인들은 교회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한다. 사면지 원주요국의 국적을 보면 알제리인이 15%, 모로코인과 중국계가 각각 10%씩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프랑스에서 퇴거시, 공항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항의시위를 볼 수 있다. Air France노조는 노조원들이 강제출국에 동조할 수 없다고 하여, 출발이 지연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Air France사는 항공기마다 1명의 피추방자와 사복차림의 동승인만을 태울 계획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Sabena를 경유하여 더 많은 아프리카 이주민들을 추방할 계획중에 있다.

이주에 관한 프랑스 로마카톨릭교회의, 영화감독, 의회좌파의원들은 비승인 외국인에게 더 많은 합법적인 거주권을 부여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수상은 본 법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면, "92%의 프랑스국민이 정부의 이주규제안을 찬성하고 있다. 우리가 이에 대해 실패한다면, 우리는 92%에 해당하는 유권자를 좌우파의 품에 안겨주는 꼴이 되고 말것이다"라며 이주를 정치문제화 하고 있는 좌파를 비난했다.

죠스팽은 프랑스로의 이주열풍이 사라지길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Jean-Pierre Chevenement내무장관은 최종적으로 75,000여명의 외국인이 추방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는 추방을 반대하며 반 이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좌파를 "이주규제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 우리사회 특정지역을 계토화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권자들을 극우파의 품에 안겨주는 것과 같다"며 비난했다.

Chevenement은 계속해서 불법이주를 규제하는 것은 합법적 이주를 용이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아프리카 지역민들에 대한 비자발급자유화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만일 석달의 방문비자를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프랑스에 체류하여, 이를 출국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비자취득요건의 강화와 같은 다른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국 의회입후보자전선은 자신들이 당선될 경우 프랑스에 유리한 차별이 허용되는 국적선택우선권(National Preference)를 부여하는 법률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에는 전체인구 5,800만명중에 외국인이 4백만명가량 차지하고 있다.

1998년 4월 8일자 Reuters통신, Francois Raitberger기자, "죠스팽, 프랑스 이주문제 해결지지"

1998년 4월 9일자 Irish Times, Laralowe기자, " Voices of left sound faintly through uproar on immigration"

영연방/아일랜드 ; 망명

영국과 아일랜드는 급증하는 망명신청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더욱 엄격한 규제를 고려중에 있다. 내무성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알선 업자들이 알바니아와 전 유고슬라비아 지역의 불법이주민을 Ostend와 Zeebrugge의 Belgium항에서 영국으로 향하는 트럭 등에 이들을 숨겨 들여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1998년 4월 UK내무부장관 Jack Straw는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의 집시들이 망명을 위하여 UK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4월 9일, 그는 잠재이주민들에게 "UK로 들어올수 있다고 생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1997년 11월 집시들이 영국이 망명요청자들에게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한다는 TV프로그램을 시청한 이후 Dover에 도착했다고 한다. 지난 6개월 동안 UK는 600여명의 Czech와 Slovak인들의 망명요청을 거부했다.

많은 수의 집시들이 EuroStar열차를 타고 해협터널을 통하여 UK로 유입하고 있다. 4월 영국정부는 운송세법(Carriers Liability Act)을 열차에도 확대 적용하여 Eurostar의 경우에도 적법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채 UK에 입국하는 각 승객에 대해서 200파운드(3,34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영국에서 1997년에만 6,240여명이 추방되었고, 24,375명이 입국을 거부당했다.

4월 8일 영국정부는 전 유고슬라비아 국민에 대한 여행규제조치를 취해서 이들이 영국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경우일지라도 비자를 취득해야만 하게 되었다. 1998년 5월 영국정부는 망명요청이 거부된 외국인의 출국을 가속시키기 위해서 망명제도를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4월 16일 교도감찰장은 미국법에 따라 200여명을 수용하고 있는 Campsfield House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용시설의 대다수 문제점들이 수용시설요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 UK 전역에 걸쳐 900여명의 외국인이 수용되어 있다. 외국인들의 경우 UK에서 출국되기 전 이들이 도피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숙소”에 최대 30일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수용의 논리이다. 그러나, Campsfield에 남아 있는 대다수의 피 수용자들은 적게는 3개월에서 그 이상 수용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중 많은 수가 1년이 넘게 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론상으로는 비록 피수용자들이 캠프내에서는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계획된 활동은 거의 없고, 부적절한 의료보호와 감독, 그리고 피수용자들을 다루는 시설요원들의 법적권한도 불분명하다.

UK이주당국은 수용소를 망명요청자들의 망명요청을 지연, 방해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도피할 소지가 있는 망명자를 수용구금하는 것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감시 단체는 확신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전체 망명신청자 수용능력의 1%밖에 되지 않는 침상의 경우는 세분화된 수용시설에서 사용가능하기 위한 대폭적인 침상수의 확충과 명확한 규칙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본 보고서의 98개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4월 21일, UK여성과 결혼한 2명의 외국인이 영국체류허가 신청을 고등법원에 냈다. 패소시에는 이들은 자국으로 되돌아가, 그곳에서 자신들의 아내와 결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여섯달은 족히 소요되는 허가 신청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아일랜드

망명신청자의 수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1998년 1/4분기에만 1996년도의 총 인원보다 많은 거의 1400여명이 망명신청을 했고, 이외에 4600여건의 망명신청이 미결상태에 있다. 1997년의 망명신청에 관한 516건의 결정중에서 208명의 신청자가 난

민지위를 획득했으며, 304명은 거부당했다. 거부당한 사람들중에는 120여명이 아일랜드에 일시체류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1998년 4월 17일자 Financial Times, “폭동발생!”

1998sus 4월 17일자 “News rules urged for detention centers”

베네룩스 3국, 덴마크

네델란드

1998년 4월, 노동당, 자유당, D66민주당의 집권연합의 VVD자유당은 네델란드로 유입하고 있는 망명신청자들을 막고, 수십년간 지속된 개방정책을 끝내겠다는 사전 공약을 발표했다. 1998년에만 대략 32,500여명의 망명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00만명중에서 소수민족은 현재 7%를 차지하고 있다.

5월 6일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에 응한 네델란드 유권자중 64%가 이주감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60%의 유권자는 적절한 신분증명서나 credible fear(??)를 갖추지 못한 채 네델란드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즉시 추방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네델란드 경찰에 의해 임시숙소의 근로자를 위협한 알제리출신의 망명신청자가 총기살해된 사건으로 항의시위가 발생했다. 4월 24일, 서부 암스텔담교외의 Overtoomse veld에서는 네델란드 경찰과 모로코 청년들과의 충돌로 약 150여명가량의 모로코인들이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격렬한 투석전을 벌였다.

KLM 왕실 네델란드 항공사가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4500여명의 외국인을 암스텔담 Schiphol공항으로 수송한 것으로 기소되어 승객 일인당 5000길드의 벌금이 불과되었다. 이에 대해 KLM측은 서류를 검사하는 것은 독립된 안전요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항의하고 나섰다.

벨기에

지난 4월 기회균등국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벨기에에 불법유입되어 매춘을 강요당

하거나 garment shop과 식당등에서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발표 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망명절차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망명신청이 거부되면 그 외국인은 벨기에에 남아 있을 수가 있으나 이는 '착취심화'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회균등국 측은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나타난 150건 중 절반이상 이 벨기에 두 번째 도시인 Autwerp에서 발생한 것이다.

덴마크

4월 덴마크 정부는 소말리아 정부에 통고없이 3명의 소말리아 망명요청자를 Somaililand로 추방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소말리아 측은 덴마크의 개발원조금을 조건으로 망명이 거부당한 세명의 자국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현재 덴마크에는 10,000명의 소말리아 망명신청자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망명 신청이 거부당했다.

덴마크는 외국인들이 덴마크내의 가족들과 합류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할 계획중에 있다.

5월 28일 덴마크는 암스텔담 협약 승인여부에 관한 투표를 실시한다. 덴마크 유권자들은 1992년 유럽시민권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때까지 Maastricht조약을 거부했다.

1998년 4월 21일자 Deutsche Presse Agentur지, "덴마크, 소말리아 난민 강제출국에 대해 유감표명"

1998년 4월 9일자 Agence France Presse, "노예".

헝가리, 러시아

헝가리

1998년 4월 27일자 월스트리트저널지느 부다페스트당국이 일용노동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대부분의 독일의 도시에 합류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현재 모스크바 광장에는 수없이 많은 루마니아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대다수의 일용노동자들에게 하루 20\$가량되는 원래 약정한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부다페스트에서 임대료를 지불할 정도로 돈을 벌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현재 부다페스트 지역에는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13,000여명의 외국노동자에 비해서, 그 숫자를 훨씬 상회하는 25,000여명의 불법외구인 노동자가 있다.

헝가리 당국은 불법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최저임금 19,500 forints의 최소 다섯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그 불법노동자를 추방하고 있다. 1998년까지 이뤄진 138회의 단속중 절반이상에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온 불법외국인노동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단속요원들은 전하고 있다.

1998년 3월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32%의 헝가리인들의 외국인 이주민의 입국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헝가리는 4.4%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반면, 루마니아는 6.5%의 감소를 보였다. 루마니아에서의 gskekf 수입은 백만 lei (11%)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몇몇 외국인들은 미화 5000\$을 내면 합법적인 체류지위와 함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헝가리내의 5000여명의 중국계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회사설립과 안정된 법적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기타 전 소연방국가였던 국가들의 국민들은 무비자로 헝가리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루마니아인들의 비자취득에 일정자격요건을 부과하도록 헝가리와 체코공화국에 압력을 행사했으나 4월 14일 헝가리는 루마니아인들에 대한 비자취득요건부과를 거부했다.

오스트리아의 Karel Schoegl내무장관은 오스트리아에 입국하는 불법외국인노동자의 54%가 헝가리를 통해서, 그리고 14%는 체코공화국, 10%는 슬로바키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이들 국가와 100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두고 인접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체포된 불법입국외국인중 1/3가량이 루마니아에서 온 사람들이며, 이들은 대개 독일을 최종목적지로 하고 있었다.

헝가리 내무장관은 오스트리아로 가려던 불법외국인의 2/3가 현재 헝가리에 수용되어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루마니아인들이거나 집시들이라고 오스트리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1997년 3000명의 외국인을 헝가리로 돌려보내고자 했으며, 헝가리는 재허가 협정에 따라 2000여명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4백20만명의 러시아 Speakers(??)들이 중앙아시아 신생독립국가에서 러시아(230만명), 우크라이나, 벨로루시등으로 이주했으며, 앞으로 10년간 최대 백만명이상의 Russian-Speakers(??)가 이주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기타지역에서 강제퇴거 당한 12,000여명의 공식등록자와 망명을 요청한 32,000여명의외국인을 포함하여 모스크바전역에 천만명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UN난민고등판무관에 따르면 4,000여명의 외국인이 추방을 당했으며, 15명이 러시아에 망명이 허용되었다.

또한 모스크바에는 정식등록하지 않은 러시아인들이 많이 남아있으며, 이는 이들이 언제든지 체포, 벌금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등록제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3월 모스크바 시장은 등록제는 계속해서 시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모스크바에는 대략 10만명의 베트남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4,000\$을 지불하는 러시아 기관의 사기성 초청으로 현재도 많은 수의 이주가 입국중에 있다.

라트비아

라트비아는 1991년 독립이후, 1940년 소연방에 의해 강제합병되기전에 이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 모두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이로 인해 대략 라트비아 국민의 1/3이 국적을 상실했다.

라트비아의 260만명의 비라트비아시민권자 중 660,000명이 러시아인이며, 이들 중의 대다수가 엄격한 귀화시험을 인해 라트비아 시민권을 부여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라트비아어와 역사시험을 치뤄야 하는데 이 시험은 어려워 비시민권자 중 30세미만의 40%와 30세 이상의 56%가 시험을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가와 라트비아에서의 폭탄사건에 대해서 모스크바시장 Yuri Luzhkov는 러시아인에 대한 집단학살을 자행한 라트비아를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러시아 정부는 라트비아에 대한 석유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제제재를 고려중이라고 발표했다. 라트비아는 해외무역의 1/4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라트비아 의회는 1990년 이후 라트비아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 이들의 혈통과는

관계없이 2001년까지 귀화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 일부 러시아인들은 젊은 층의 러시아인들이 먼저 귀화된 이후에나 장노년층 러시아인들에게 귀화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 제도가 장노년층 러시아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젊은 층의 라트비아인은 우서 라트비아어를 배운 후 라트비아의 귀화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한 청년은 “아마도 죽고나서야 귀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남부 유럽/북부 아프리카

유럽공동체(EC)통계국은 4월 16일 유럽연합(EU) 거주자 중 1.3%가 비유럽연합국인 12곳의 지중해연안국가(알제리, 사이프러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말타, 팔레스타인, 시리아, 투니시아, 터키)에서 온 이주민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480만명의 이주민중에서 절반이상은 터키인이며, 이들 중 대다수는 독일(45%),과 프랑스(33%)에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중해 지역 이주민들 대다수는 독일을 최종목적지로 하고 있다. 1986년부터 1995년까지 비유럽연합국인 12개국의 지중해 연안국가 이주민의 50%정도가 독일로 이주했다.

10여년간 EU내로 들어온 백만명의 터키인 중, 78%가 독일에 체류중이며, 1995년에는 91,000여명의 터키이주민들의 90%가량이 독일로 이주했다.

이탈리아 튜린(Turin)의 Angelli재단의 Youssef Courgave씨는 중동지역과 북부아프리카 지역의 인구증가는 2010년이면 최악의 상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어서 그는 “지중해 지역이 유럽의 Rio Grande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과장된 것이란 것이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그리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서 그리스인들은 그 원인을 외국인, 특히 알바니아인들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하다. 그러나 경찰통계에 따르면 1997년 상반기에 발생한 범죄건수중 외국인의 범죄는 5%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어로 “filoxenia”라는 호의라는 말은 말그대로 외국인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일부사람들은 ‘filoxenia’라는 말이 xenophobia(외국인 혐오)라는 말로 바뀐것같다고 말한다. 그리스는 1997년 25만명의 알바니아인들을 추방했으며, 1998년 3월말 또다시 500여명을 추방했다. 매일 400에서 500명가량의 알바니아인의 그리스 입국이 거부당하고 있다.

현재 1020만명의 그리스인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 3월

16일 Gibraltar해협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13명의 북부아프리카지역 사람들이 배의 침몰로 익사를 당한 뻔한 사건이 있었다. 9월에는 악천후에서 배가 뒤집혀 Tarifa 해안부근에서 30여명의 북부아프리카인이 의사했다. 정부관리는 1992년 이후 Gibraltar해협에서 의사한 불법이주기도자는 대략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부아프리카인들의 이주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1997년에만 Andalncia의 Cadiz에서만 4018명의 모로코인들이 체포되었다. 3월 중순, 스페인 정부는 1998년도 불법이주민체류 승인 총인원을 1997년의 25,000명에서 약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포루투칼에는 현재 대부분 모잠비크, 브라질, 동티모르, 앙골라, Cape Verde등지에서 온 80,000명 가량의 외국인이 체류중이다. 1997년에 포루투칼은 포루투갈어 구사능력을 갖춘 35,000여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했다. 이는 포루투칼내 외국인의 8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모로코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세에서 29세사이의 90%가량이 모로코를 떠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0%이상이 대졸자이다. 현재 모로코 인구는 2800만 명이다.

2/ 아시아 국가별 이주민 현황 개요 및 관련기사

아시아 지역

일본 : 구조적 의존?

캘리포니아 산디에고 대학의 미국과 멕시코 관계 연구원은 1998년 4월에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그 보고서는 산디에고, 하마마수 그리고 일본의 광범위한 산업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1990년대 초반의 불경기 동안, 외국인 노동자 수를 계속 유지하거나 더 증가시켰다고 결론지었다.

일본의 실업률은 1998년 3월에 45년 만에 최고 수준인 3.9%로 뛰어 올랐다.

이 보고서는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의존이 계속 증가하는 과정이고 일본의 고용주들은 10년 전보다 덜 구조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의 미등록 노동자와 일본의 초청 노동자 선택 수요뿐만 아니라 견습생의 현재의 수요 양상을 둘다 비판하면서 그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은 그들의 경제에 있어서의 상당기간 지속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의 구조적인 특성을 인지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그들의 아이들을 영구적인 주민과 잠정적인 미래의 시민으로 통합하는 것에 도전하여 진지하게 투쟁해 나가야 한다.(64p)”고 결론지었다.

거의 1,200 명의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미국과 일본에 초청되었다. 산디에고에서는 초청된 사람의 약 3분의 1이 저임금의 제조회사에 있었으며 이들 회사는 1996년에 1시간당 평균 6달러를 지불했다. 그때 당시의 제조회사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12달러였다. 하마마수에서는 초청된 사람의 2분의 1이 제조회사에 있었으며 그 회사들은 시간당 평균 14달러의 임금을 지불했다.

일본의 이주민 노동자들은 전통적으로 산디에고 있는 멕시코계 노동자들 보다 더 높은 교육수준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마마수에서는 외국인들의 거의 반 정도가 니케이진계와 브라질계 일본인들이다. 이들 중의 대부분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쪽 두 나라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기초수준의 생산 업종을 차지하고 있다. 산디에고의 이주민에 의존하는 고용주들은 30명중의 83%의 외국인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숙련되지 못했다고 분류했다. 이것은 하마마수에서 27명중 38%가 숙련공이 아니라는 것과 비교된다. 새로운 고용인에 대한 교육은 산디에고에서는 최소 8일이고 하마마수에서는 5일이다.

캘리포니아 산디에고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웨인 코넬리우스는 일본에서의 견습생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시키는 제안은 이주민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일본의 소규모 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고용주들은 주당 20-25%의 일하는 시간을 소비하는 훈련을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코넬리우스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초청된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농업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는 국회의 제안이 기각될 것이다. 왜냐하면 산디에고의 고용주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년 단위의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에는 약 9,700명의 미얀마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 중의 3,900명은 외국인 노동자로 등록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불법 체류자들이다. 미얀마 정부는 일본에 사는 그들의 시민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그들의 대부분은 세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일본에 있는 미얀마인들은 일본에서 번 돈의 10%를 미얀마 대사관에 지불하도록 요구되어 진다. 미얀마 대사관은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이민 서류를 세금을 낼 수 없는 미얀마인들에게도 내어 주라는 제안을 완강히 거부한다. 미얀마 대사관은 그들을 일본에서 궁지에 몰린 채 그대로 남겨 두고 있다. 일본은 대만인들이 자신의 여권이 있으면 일본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할지 모른다. 대만인들은 현재에는 방콕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통해 특별 허가 서를 얻어야 한다. 1997년에는 약 860,000명의 대만인들이 일본을 방문했다.

웨인 코넬리우스, 야수오 콰와하라 저, 1998년도 판.
미국과 일본의 이주민 노동자의 역할: 산디에고와 일본의 하마마цу에 대한 비교 연구.

‘라 졸라’ 미국-멕시코 관계 연구소(La Jolla. Center for US-Mexican Studies)

한국 : 뒷에 걸린 불법 노동자들

남한은 불법 노동자들이 그 나라를 떠나라는 최종기한을 1998년 3월 31로 정했다. 그러나 최종기한이 되었을 때 많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은 떠날 수가 없었다. 신문 보도는 1997년도에 한국에는 370,000명 가량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75%가 허가서가 없었다고 추정했다. 많은 수가 한국의 불경기가 시작했을 때 떠났다. 그러나 그 중에 150,000명에서 180,000명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고, 약 65%는 임금을 못 받고 있어 돌아갈 비행기표를 살 수 없기 때문에 3만 명 정도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JCMK)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도난 회사로부터 천억원(미화로 약 72억 2천만달러) 정도의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말한다.

4월 중순경에 약 4만 7천명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종기한은 1998년 4월 30일로 연기되었다. 1998년 5월 이후에 남아 있는 불법 노동자들은 일년에 백만원씩(미화로 722달러) 내야 하는 그들의 불법 체류 기한에 대한 벌금을 거부하고 있고 (그들의 대부분은 한 달에 기껏해야 4백 달러를 벌었다), 고용주들은 각각의 불법 노동자에 대해 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실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연대해서 저항하는 한국인 실직자와 외국 노동자들의 숫자가 약 백 이십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수는 하루에 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남한은 실직 보험을 가진 힘겨운 경제 상태일 뿐이다. 외국인 임금에 대한 법령은 최저 임금의 50-70%로 최근에 상향 조정되었다. 거래할 때 연합 단체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는데 고용주들에게 보다 많은 유연성을 부여할 것을 합의했다. 그러나 법령은 5명 보다 적은 노동자를 가지고 있는 고용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가 없다.

윤 서경, “고용주들은 값싼 노동력을 잃고 있다.”, Straits Times, 1998년 4월 22일 판.

홍콩 / 중국

어린이

부모 중에 한 쪽이 홍콩 거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콩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1997년 7월 1일 이전에 도착한 중국 본토 어린이들은 홍콩에 머물 수 있으나 출국 중명서 없이 1997년 7월 1일 이후에 도착한 본토 어린이들은 그들의 출국 중명서를 기다리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홍콩은 1998년 4월 2일 법정에 항소를 한다.

출국 중명서 없이 홍콩에 들어 온 어린이들은 1,400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에 850

명은 1997년 7월 1일 전에, 550명은 그 이후에 들어 왔다. 홍콩 정부는 550명을 중국으로 즉시 돌려 보내지 않았다. 어린이들은 베이징에서 임명된 입법부가 법률을 만드는 권리에 대해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

미국으로 이주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푸 얀이라는 중국의 남동부 지방에서 왔다. 그들 중 몇몇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중국인 자치 지역을 벗어나 아틀란타와 같은 도시에 정착하고 있다.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 오기 위해 3만 달러나 그 이상을 지불한 밀입국자에 대한 이야기는 수천의 중국인들이 불법 이주민일 거라는 인상을 준다. 1996년 10월에 INS는 미국에 3만 명보다 적은 수의 중국인들이 있다고 추정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에 있는 2백 7십만의 불법 멕시코 이주민들과 3십 3만 5천의 불법적인 살바도르 이주민의 수와 대비 된다.

베이징은 고용주들에게 정부 사업으로 실직된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십 이만의 이주민 노동자들을 해고하라고 명령하고 이주민의 취업을 12개의 분야와 198개의 직업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도살장에서 일하는 것, 청소하는 것, 송장을 화장시키는 것과 같은 더럽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다.

6월부터는 중국 도심지에 있는 고용주들은 각각의 고용인의 임금의 6%에 해당하는 돈을, 고용인들은 2%에 해당하는 돈을 의료 보험 비용으로 내야 할 것이다. 중국 통화에 대해 평가 절하를 하지 않는 중국은 더 많은 관광객들은 해외로 보내고 있다. 중국은 1996년에 백 6십 만보다 더 많은 2백 6십만의 주민들이 해외 여행을 하도록 허가했다. 중국은 주민들이 여행사에서 서류를 만든 후에 35달러의 비용으로 한 번 사용 가능한 여권을 내 주고 있다. 이것을 중국 정부가 외국 여행 집단을 뒷받침 해 온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동아시아에는 총계적으로 약 2조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2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있다고 추정된다. 로스엔젤레스 타임 지에 따르면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을 은신처나 보호처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1978년에 중국이 베트남에서 재산이 몰수된 중국 동포들이 중국에 입국하기를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다.

중국은 기원 후 1000년경 이후로 동남 아시아 등지에 이주민을 보내기 시작했다. 1603년경 중국인들은 말레이지아에서 스페인 사람들 보다 많아 졌다. 1800년대에 중국인들은 쿠알라 룸푸르에 근거를 두고 기업가로 뿌리를 내렸다. 그들은 자주 회

생양이 되어 1965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1969년에는 말레이지아에서 많은 수가 죽임을 당했다.

홍콩에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은 현지의 필리핀 대사관이 부과하는 요금에 대해 반대했는데 그것은 필리핀 여권 비용으로 510달러, 가정부 계약 증명에 대한 비용으로 425달러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파트리스 사포다카 저,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동남 아시아의 중국”,
로스엔젤레스 타임즈, 1998년 4월 11일 판.

●캐리 리 저, “이주민 정책에 부분적 성공을 한 홍콩 정부”, Reuters,
1998년 4월 2일 판.

위기와 이민

동남 아시아에서 경제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불법 이주민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지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이주민의

수를 가지고 있고 이주민들이 교신할 수 있는 잘 발전된 연결망이 합법-불법으로 퍼져 있다.

비록 정부의 자료는 1997년 중반에 3백 5십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동 아시아와 동남 아시아에 있었다고 추측하지만, ILO에 따르면 그때 당시 약 6백 5십만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일하고 있는 나라에서 강제 출국 당할지 모르는 이주민의 수는 2백 만에서 3백 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이민은 3가지 경향때문에 증가될 것으로 예견된다: (1) 한국, 타이완, 말레이지아 그리고 싱가포르 같이 이주민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실직한 본토인에게 직업 시장을 개방하기 위하여 이주 노동자를 내 보낼 계획이다. (2) 그러나 정책은 일관되지 않다. 예를 들어 말레이지아는 일이 없는 외국인들이 대농장의 일을 받아 들인다면 남아 있도록 허가한다. 그리고 타이완은 외국인들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남아 있는 것은 허가한다. (3)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다른 이주민을 내 보내는 국가들에서의 실직의 증가는 그들의 이주민들이 마지못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들이 취업을 위해 이민을 시도하도록 고무시키고 있다.

3% 이하 였던 실직률은 2배에서 3배가 증가되어 6%에서 12%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9천만의 노동자들 중에 약 9백만 명이 실직되었고, 천 3백만 명은 1998년 말까지 직업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세 가지, 송환, 불법 고용, 불법 이민의 증가는 보내고 받는 나라들 둘 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송환된 사람들 중에 몇몇은 귀환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 예를 들어 타이완에서 베마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은 미얀마에서 강제 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어 왔다. 또 다른 예로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불법 이민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의 팽배는 말레이지아와 싱가포르와 같은 이민 국가들의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이 이주민들을 계속해서 내쫓기 때문이다.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가 누가 불법 이민에 책임이 있는지를 지나치게 논쟁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 사이의 갈등은 역시 계속될지 모른다.

브루나이는 불법 이주민에 대해 최소 3만에서 최고 십만 달러 가량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벌금을 부과해 왔다. 불법 이주민을 고용하는 국내의 고용주는 각각의 불법 노동자에 대해 6천에서 만 2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997년에는 577명의 불법 이주민들이 불잡히고, 61명의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되었다.

아시아에서의 이주민의 곤란한 상황은 인간의 이해관계 측면과 맞물려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많은 아시아 고용주들은 안전한 보관을 평계로 노동자들의 서류를 가져 간다. 그리고는 종종 그 서류를 돌려 주지 않고 서류가 없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 노동자들은 지불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도 불평을 할 수가 없다.

방글라데시는 자국의 노동자들을 위해 새로운 노동 시장을 찾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1997년 목표는 3십만의 노동자들은 해외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지 2십 3만 명이 해외로 보내졌다. 해외에 있는 이주민들은 1996년에 14억 달러보다 더 많은 15억 달러를 1997년에 송금했다.

이주자들

외국인 전문 인력이 동남 아시아를 떠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이 달러로 임금이 받기 때문에 고용주의 임금에 대한 부담은 국내 통화의 평가가 절하로 가중되었다. 낮은 경제 성장은 싱가포르로부터의 출국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1997-98년의 경제 위기의 영향은 아시아에서 보다 강력한 연합 단체를 조성할 것이라고 예전한다. 수출 지향적 제조업 분야의 확장은 그들이 시골 출신의 도시 거주자이기 때문에 기꺼이 저임금으로 일할 산업 노동자들의 수를 증가 시켰다. 동남 아시아 인구의 더 많은 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정부와 대기업간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경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연합 단체는 경기 회복 후에 경제 정책을 만드는데 더 활발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998년 3월 3일 판 로스엔젤레스 타임지는 아시아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기사를 포함시켰는데 그 기사는 폴 크러그맨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의 경제 기적은 값싼 노동력의 기초 위에서 성립되었고, 1997-98의 경제 위기는 주권 국가들이 실직한 외국인들을 그들 본래 나라로 돌려 보냄으로써 실직을 수출하는 것을 고무시키고 있다. 나라의 경계 내에서 정부는 도시에 사는 시골 출신의 사람들을 농촌으로 돌려 보내려 노력하고 있다. 1998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라마단 후에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연 1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차 요금은 삭감하고, 귀환을 줄이기 위해 그 휴일 후에 도시로 돌아 오는 기차 요금은 냉혹하게 올렸다.

이 기사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보다 중동 아시아와 동남 아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초청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제한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많은 나라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의 여권을 고용주에게 주고 이동을 제한 받는다.

●존 그리너웨이 저, “조건 없이 늘어나는 노동”, *Canberra Times*, 1998년 4월 12일 판.

●이그나우스 스테판 저, “불법 이주민에 대한 가혹한 조치들”, 1998년 4월 1일 판.

●데이비드 램 저, “값싼 노동력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로스엔젤레스 타임* 지, 1998년 3월 3일 판.

말레이지아 : 추방

추방

1998년 4월 10일에 약 40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담과 울타리를 넘어 쿠알라 룸푸르에 있는 미국, 스위스 그리고 부르나이 대사관에 들어 왔는데 이 대사관 중에 몇 개는 말레이지아 경찰이 들어와 인도네시아인들의 몇 명을 데리고 가도록 허가했다.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아센 사람들인데 그들은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면 핍박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마트라로 귀환 시, 아센 사람들은 그들이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군인에 의해 12일 동안 격리된다.

쿠알라 룸푸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온신처로 찾아와 지금은 말레이지아에서의 정치적 도피처를 찾고 있는 8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수용소 허가가 날 때까지 미국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또 다른 14명은 쿠알라 룸푸르에 있는 UNHCR 사무실에서 온 신처를 찾았다고 미국 정부는 4월 14일에 발표했다.

3월 중순에 충돌이 있었던 장소인 스메니 구류 수용소는 지금은텅 비어 있다. 8명의 인도네시아인들과 한 명의 경찰관이 그 소동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그 소동은 이주민들이 그 수용소로부터 쿠알라 룸푸르 밖으로 추방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났다.

4월에 말레이지아에서 개시된 활동은 체류 허가 없는 인도네시아 인들을 추방하는 것을 계속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송환하지 않는데 대한 비용의 반을 지불하고 있다. 약 천 30명의 방글라데시 인들은 4월 중순에 쿠알라 룸푸르에서 다카로 가는 특별기에 실릴 것이 예상되어 졌었다. 말레이지아 외무 장관인 압둘라 앗마드 바다위는 불법 이주자들을 발견해 쫓아 내기 위해 경찰과 군인의 동원을 옹호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직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말레이지아에서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내국민들을 먼저 돌봐야 한다. 사랑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말레이지아 추방을 증가 시킴에 따라 1998년 4월 7일에 워싱턴 포스트 지는 말레이지아는 인도네시아인들을 추방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보도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지아로 온 이민은, 전국을 가로지르는 대량의 연결 망을 만들어 온 부패한 이민 당국들과 이주민, 노동 매개인 그리고 창녀들에 의해 확립된 하위 문화 보다는 덜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취업

말레이지아는 1998년 8월 체류기한이 만기가 되는 85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허가가 갱신되지 않을 거라고 발표했다. 1998년 8월 15일부터 2십만의 외국인 건

축 및 서비스 종사자들(호텔, 음식점, 페스트 푸드점, 세탁소, 그리고 가라오케집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허가는 갱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말레이지아 경제의 일부부는 외국인들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무부 차관 다툭 옹 카 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상황을 분석하고 나서 단지 불법자들에 반대한 활동만을 실행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아 냈다. 우리는 그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를 줄여 나가야 한다.” 말레이지아 농업 생산 협의회는 400개의 말레이지아를 대표하는 대농장 가운데 85%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많은 고용주들이 계속 불법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불법 노동자들이 발견되면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이 지사에 의해서 공급되었고, 그 고용주들은 그들이 불법 노동자들인지를 몰랐다고 말한다. 1997년에 수정된 이민법 55조에 따르면 5명 내지 그 이상의 불법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6개월에서 5년의 감옥 투옥형을 받고 각각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당 만RM에서 5만RM사이의 벌금형을 받는다.

입국

말레이지아 정부는 300명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매일 밀입국을 시도한다고 4월에 추정했다.

말레이지아로의 입국을 시도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말레이지아 대통령 마하시르 모하마드는 그들을 새로운 난민들로 용어를 정의했다. 말레이지아로부터 추방당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종종 인도네시아의 영토인 보르네오에 있는 누누칸 티무르와 같은 중간 지점에 남아 있다. 거기에는 추방된 여자의 거의 반 정도가 재입국을 위해 충분한 돈을 벌려고 하는 창녀들로 보도되고 있다.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달간 유효한 붉은색의 국경 통과 증명서를 가지고 말레이지아에 합법적으로 들어 간다. 그런데 그 통과 증명서는 ‘파스린타스바타스’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약 18달러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한달 후에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말레이지아는 그들을 계속 수색한다. 4월 25-26일 주말에 400명의 불법 외국인들이 붙잡혔고, 4월 23에는 722명이 건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타이완

타이 정부는 1998년 3월 1일에 추방 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과 사회 복지부 장관은 이민 당국이 유연성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왜냐하면 몇몇 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베마, 라오샌드 캄보디아를 포함하는 13개의 지방과 어업을 하는 22개의 다른 해안 지방에서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노동부 장관은 그들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타이 천연 고무 농업 협의회는 더 혹독한 국가 정책의 시행이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했다고 불평했다.

● 세스 미단스 저, “호경기가 끝나자 이주민들을 내보내는 말레이지아”, 뉴욕 타임지,

1998년 4월 9일 판.

● 신디 쉬너 저, “불법 이주민들에게 혹독해진 말레이지아”, 워싱턴 포스트지,
1998년 4월 7일 판.

● “다음 주에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추방하는 말레이지아”, Reuters 1998년 4월 5일 판.

된 117명의 사람들은 6주 이상 투옥형이 선고되었고 4대에서 6대의 태형이 선고되었다. 싱가포르의 불법 입국에 대한 최고의 형벌은 6개월의 투옥형과 태형이다. 여자들은 태형을 받지 않는다. 불법 이주민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주는 것은 6개월에서 2년의 감옥형이 선고되고 최고 6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5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사람들은 역시 태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싱가포르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국민들에게 만약 어떤 사람이 여행 비자로 유효 기간 이상을 체류한다면 3천에서 5천 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Straits 타임지는 1998년 3월 19일 불법 이민에 대한 조취를 취했다: “싱가포르는 먼저 싱가포르 자신을 돌봐야 한다. 그것은 첫째로 싱가포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먼저 싱가포르가 불법이민으로부터 자유로워 지는 것이다.”

1998년 4월 1일부터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특권에 대해 고용주들에 부과되는 징수금 또는 세금은, 국내 근로자에 대해서는 345 싱가포르 달러, 숙련되지 않는 건축 노동자에 대해서는 470 싱가포르 달러, 그리고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 싱가포르 달러에 해당한다.

싱가포르 : 실행

3백 5십만의 인구를 가진 싱가포르는 약 45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십만의 외국인 가정부를 포함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일곱 가구 당 한 집 꼴로 가정부를 가지고 있다.

가혹한 고용주 처벌 법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이주민의 수는 증가하는 것 같다. 1998년 1월-2월 사이에 평균적으로 한 달 234명의 불법 외국인 노동자 가 체포되었고 이것은 한 달에 157명이었던 1997년의 수치보다 많아졌다. 1997년에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것에 대해 540명의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처벌이 내려졌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에 대한 법 조항은 잠시동안의 법률 위반에 대해 투옥형을 언도한다.

1998년 3월 21일에 싱가포르에 불법적으로 들어와 체류해 온 것에 대해 유죄가 증명

3/ 이주노동자 관련 보고서

A 홍콩의 이주노동자 - AMY YEARBOOK 98'

개 관

30년만에 홍콩은 동아시아의 국제무역중계항과 세계 경제 중심축의 하나로 부상했다. 홍콩은 주로 화교자본으로 중계항으로 출발했다. 그 영역은 경공업에 집중함으로써 점차 산업화되었다. 중국이 1970년대 후반에 대외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로 홍콩의 경제는 중국에 대한 주요 투자가로 변모함으로써 급속히 팽창하였다. 디자인과 마케팅 그리고 금융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홍콩 내부에서 극적으로 증가한 반면, 다른 신흥공업국들에서 보여지듯이 홍콩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중국해안에 위치함으로써 시작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의 한 단면

이주는 홍콩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것이다. 홍콩의 노동의 주요 원천은 중국 본토로부터의 꾸준한 유입에 있다. 홍콩에 있는 중국인 인구는 중국 본토인들이 공산화와 문화대혁명 때의 정치적 혼란을 피해 홍콩으로 도망 왔을 때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비중국 아시아계 이주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현상이다. 금속가공이나 전자, 건설과 같은 제조업 분야 그리고 레스토랑이나 호텔과 같은 서비스 분야의 노동비용은 1980년대 후반까지 상승했다. 홍콩은 기업영역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라고 묘사된 실업률 2%의 완벽에 가까운 완전고용을 이뤘다. 그 대답으로 정부는 지방의 여성노동력을 충분히 동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물가상승과 엄청나게 비싼 생활비 때문에 지방 여성들은 가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편입되었다.

결과적으로 외국노동자들의 고용은 인기를 얻었다. 외국노동자들의 유입이 1970년대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수는 극적으로 증가했다. 그 수는 1988년 이후 갑절로 늘었다. 1997년 12월말 현재 홍콩에는 171,333명의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 대다수인 80%는 필리핀으로부터 왔다. 이민국은 1996년 12월 현재 128,800명이 1997년 말 현재 146,400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은 '이것은 홍콩 역사상 가장 많은 필리핀 인구이다. 필리핀인은 홍콩에서 현재 가장 큰 인구집단이다'라고 했다.

이민국은 홍콩에 들어오는 인도네시아인과 인도인들의 수적 증가를 보도했다. 또

한 홍콩에는 매우 많은 수의 본토 중국인, 스리랑카인, 파키스탄인 그리고 네팔인들이 있다.

홍콩의 이주 노동자들은 전적이지는 않지만 주로 홍콩 내에서 일한다. 홍콩은 1989년에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약 3,000명의 기술자들과 장인들이 우선적으로 모집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정부는 노동력 수입의 범위를 넓히고 그 할당량을 늘림으로써 수입노동력의 더 많은 증가를 허락해야만 했다. 동시에 새공항 건설과 연관하여 집단적인 건설계획 때문에 정부는 더 많은 노동 수요를 가져온 [새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계획]을 입안했다. 1997년 1월 현재 3,317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그 공항을 짓는 중이다.

건설산업에 이주 노동자들을 유입하고자 하는 회사는 이민국의 [특별노동수입계획]의 인가를 얻어야만 한다. 오직 제한된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만이 특정한 업무를 위해 유입될 수 있다. 이 이주 노동자들은 단기적이다. 즉 1998년 공항의 완공에 맞춰 떠나야만 한다. 제조업과 유통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도 수천의 이주자들이 땀을 흘리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과 수입된 건설노동자들 모두 그들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별히 제한적인 규정에 의해 규제 받는다. 첫째, 그들의 체류는 완전히 그들의 일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한정 홍콩에 체재할 권리가 없다. 둘째, 그들은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을 위해 유입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나 기업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어떤 다른 종류의 일을 찾거나 옮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그들은 홍콩의 영주권을 결코 가질 수 없고 그들의 식구를 데리고 오지 못한다.

그들은 이민국에서 발행한 표준 규약을 따른다. 그것은 적절한 숙식과 필요한 경우 의과적 치료를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최저임금도 또한 있다. (1997년 현재 3,860 홍콩달러) 수입된 건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없다. 그러나 그 임금은 그 이주자가 홍콩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 이민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이주 노동자들은 홍콩의 범죄, 노동 혹은 다른 경우 등을 위한 법체계에 접근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계약 위반에 관하여 그들의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핵심 사안

중국본토 노동자

1990년 5월 홍콩 정부는 공항건설과 관련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수

입을 위해 [공항핵심프로그램을 위한 특별노동수입계획](ACP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의 고용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ACP계획의 실행에 발맞춰 초기에는 최고 2,000명의 상한선을 두었다. 1995년 말에는 그 계획의 전체 노동력의 25%에 해당하는 5,000명 까지 그 상한선이 올라갔다. 1996년 말에는 5,288명의 노동자가 있었다.

홍콩의 착취당하는 수입 노동자들과 직장이 없는 지방 노동자들은 1995년 12월 연대하였다. 1400명 이상의 중국으로부터의 이주 노동자들은 1995년에 홍콩의 새공항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단체를 결성하고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임금의 체불과 봉급의 부당한 삭감 그리고 열악한 숙식에 불만을 가졌다.

그 분투의 결과로 중국 정부는 1996년 6월에 노동력 알선회사의 운영을 21개의 인가된 회사로 제한했다. 또한 1996년 말에는 상황개선의 일환으로 홍콩정부와 협력하여 중국대외무역부는 노동자 모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1996년 말에 홍콩의 입법부는 노동력 수입에 관한 일반 사항과 특히 이 문제에 관한 일련의 사실확인 공청회를 열었다. 조사보고서에서 입법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비평을 내놓았다.

1. 노동력 알선회사나 중개인들이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명목으로 이주 노동자들에 게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곳은 소개료로 60,000 위안을 매달 운영비 명목으로 800 홍콩달러를 요구한다.

2. 이주 노동자들은 홍콩당국에 제출된 기준 계약서와는 다른 조건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요구 당한다. 이 때 노동자들은 홍콩당국에 보고된 것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았다. 이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인데, 이는 특정한 직종의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맞춰져야 한다.

3. 계약주들은 '평균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에 평균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수입'이 용인된다. 수입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지식이 불충분하고 해고당할 것을 우려해서 대부분은 당국에 그 상황을 알리는 것을 꺼려한다. 이는 계약주들에게 그릇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계약주들로 하여금 지방 노동자들을 모집하는데 냉담한 반응을 보이도록 이끈다.

4. 수입 노동자의 수에 많은 인가를 가지고 있는 계약주들은 부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지방의 알선회사나 중개인들은 그런 계약주들을 접촉할 것이고 그들의 인가인원 속에서 노동자를 수입하는데 매우 호의적인 조건을 제공한다. 그 제공된 조건은 수입노동자들에게 상당히 낮은 임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계약주들에 게 지불될 많은 돈 그리고 말 그대로 돈 안드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입법부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1. 홍콩은 국제노동기구의 [컨벤션 97]을 개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 컨벤션은 옮겨 다니며 열리는 것이다. 수입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한참 낮을 테지만 수입 노동자들에게 지불된 자유시장 임금제의 채택은 그 컨벤션의 정신에 위배될 것이고 또 홍콩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입법을 통해 중개인의 활동을 제한한다. 중국대외무역부는 "인가된 노동알선회사의 수는 단지 21개로 축소될 것이고 그들은 [고용조례] 아래 '고용에이전시'로 홍콩에 우선 등록하도록 요구될 것이며 수수료의 표준제도는 공포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입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조건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주택건설계획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일년에 85,000호의 주택을 짓기 위해 1998년 3월부터 주택건설계획을 위한 제한 없는 이주 노동자들의 수입을 발표했다. 분노한 지방 노동자들은 이것이 홍콩의 실업률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논박했다. ((8월과 10월동안만 4,000명의 지방 노동자들이 해고되었고, 실업률은 12월에 79,000명의 실업자와 함께 2.4%로 증가했다.) 둘째로 현재의 노동자 수입계획을 점검하고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수입계획의 도입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다. 입법부에 의한 권고에 덧붙여 홍콩 기독교산업협회와 다른 지방 노동단체들도 또한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모집과 알선회사의 중개인제도를 철폐할 것. 노동자들이 소유권 침해나 노동 분쟁으로 만회할 동안 기본 생활과 주거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조할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장 기금을 창설할 것.

외국인 노동자들

1. 노동권에 대한 인식 부족

이주 노동자는 홍콩의 법제도 아래 구제 받을 수 있는 반면 많은 수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권리에 대해 무지하고 도움을 위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른다. 이것이 그들을 매우 용이하게 이용당하게 한다.

2. 노동의 기준 이하의 조건과 배상의 부족

임금지체 노동자에 의한 불만, 사용자의 정당한 휴일과 공휴일 그리고 표준적인

숙식의 제공에 대한 거부 그리고 계약조건과 다른 일을 하도록 명령 당하는 것 등에 의한 불만제기가 있어왔다.

이주 노동자들이 그들의 사용자와의 불만을 해결하기를 추구할 때, 그들은 정상적으로 노동관청에 불만을 접수한다. 노동관청은 노동계약으로 일어난 어떠한 분쟁에 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주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동관료와 사용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간의 화해모임이 열린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불만은 노동심판위원회나 소수자불만위원회(MECAB)로 이관된다. 이러한 통로는 보다 공식적인 것이고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 있다. 전혀 해결에 이르지 못하면 주재관리나 위원장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2주 규칙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장 비우호적인 정책은 “2주 규칙”으로 더 잘 알려진 “체류에 관한 새 조건”이다. 이것은 어느 한 쪽에 의해서건 계약의 일방적인 종료를 용인하고 있다. 즉 분명히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며 사용자들은 쉽게 이 특권을 남용한다. 2주규칙은 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국가로 2주 냉에 돌아가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주권의 이양

1997년에 홍콩의 중국으로의 반환이 외국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잊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1996년에는 다른 수준의 즉, 영국 외무장관과 필리핀 외무부장관 사이의 대화 그리고 중국의 총서기와 필리핀 대통령 간의 대화가 있었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반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지금의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러한 확인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주민들은 매우 우려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국 본토의 노동자들로 교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정치적 이양은 이주민들에게 그들이 홍콩에서 영구히 머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하였다.

이주민조단체들은 홍콩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국 본토 노동자들로 교체하는 것은 재정적 그리고 사회적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10만명 이상을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만이 주어져 있고 주거권도 없고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들어올 수도 없으며 그들의 자식을 위한 학교나 집을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부에 거의 지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에

중국 본토인들은 그러한 권리가 주어져야만 하는 민족인 것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에 관하여 현 정책이 큰 변화를 겪은 적은 없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비자를 내주는데 있어 보다 엄격했다.

개관

냉전정책에 힘입어 일본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그리고 대단위의 미국원조로부터 크나큰 수혜를 입었다. 그리고 세계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다. 1970년대에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그 위상을 높였다. 하청구조를 포함한 기업활동이 이 지역에 재소개되었다. 이것은 대만과 남한이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980년대에 일본, 미국 그리고 서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은 국내의 탈공업화와 싼 부지와 원료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노동력을 위한 동아시아로의 이전 등으로 특성화되는 경제재편의 단계에 도달했다. 이 기간 동안에 일본은 이 지역의 경제강국이 되었다. 다시 말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전체 투자와 공식적인 개발원조는 85억 달러에 달했다. 이 과정은 노동의 새로운 지역적 구분을 형성했다. 이 지역에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전한 공장들을 위해 땅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 반면 신흥공업국들은 자본을 제공하고 기술과 시장을 조종했다.

이주노동자들의 한 단면

한 때는 외국인들에게 “폐쇄적”이라고 생각되기도 했지만 일본은 1980년대 후반에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노동자들의 큰 유입을 겪었다. 이것은 “시장 협정”에 의해 촉발된 온화의 급격한 가치상승에 주로 기인한다. 이 협정은 일본에서 값싼 노동력이 크게 부족한 가운데 입안된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일본과 이웃지역간에 커다란 경제적 틈만 벌여놓고 말았다.

1990년 6월에 “이민조절과 난민허가법”이 효력을 발휘했다. 이것은 이민법이 1951년에 공포된 이후 가장 중요한 개정중의 하나이다. 그 법은 넓은 범위의 “숙련 노동자”에게 이민을 개방했으나 그 “비숙련”이라는 용어는 소규모의 “일본 자손들”的 산업에 할당되었다.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소규모 산업에 있어 계속된 노동력의 부족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의 수는 1980년대에 크게 증가했다. 소규모 산업은 산업상업회의소와 함께 정부에게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늘어나는 이주 노동자들을 다루기 위해 개정된 이민법은 1989년 12월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990년 6월 발효되었다. 그러나 “비숙련” 노동자들이 연관되는 한, 당시 일본 경제의 노동력 부족을 메웠던 약 180,000으로 추산된 체제기간을 넘긴 노동자들은 그 개정에 의해 합법화되지 못했다. 대신에 재외 일본인들은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

한 새로운 노동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수는 결국 1996년 현재 180,000명으로 늘었다.

개정에 있어 또다른 중요한 변화는 기업주들로 하여금 낮은 임금의 교육생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을 피하도록 했으며 1982년에 도입된 “교육생”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1986에서 1994년 사이에 교육생의 수는 점차 증가했다. 또한 1990년의 개정에 따라 불법적인 작업을 부추긴 사람은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형사규칙은 미등록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 브로커들까지도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제재 때문에 사용자들은 체류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고용했다. 그러나 그 정책은 착취적인 근로조건을 강화함으로써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이 제재는 곤란을 겪는 미등록 노동자들을 돋는 운동가들을 단속하는데 평계로 이용되었다. 예를 들어 노부유키 아오야기씨(1994)와 김송이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적인 노동에 중재한” 이유로 이민법을 오용한 죄로 각각 다르게 체포되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단순히 상담하고 공동체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적 필요와 일자리 없는 이주민들에게 대한 보호만을 제공하던 중이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강화된 통제에 크게 기인해 1990년 이후 이민자 유치소에 있는 피억류인의 수는 증가해왔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이민국 관리들은 때로 그러한 이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왔다.

1990년대 중반에 거품경제가 붕괴하고 일본의 경제는 가라앉았다. 그 회복과정은 1994년에 바닥을 친 이후 둔화되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특히 이 기간에 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계 남아메리카인들이 일본에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일본 자손들에게 근로비자의 효력을 연장하는 조건을 강화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상당한 임금의 감소를 감수했다.

핵심 사안

다음은 1997년 일본에서 표면화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전형적 사례이다.

나가노 올림픽 경기장 건설

이주 노동자들은 경제적 도구로 이용된다. 다시 말해서 “불법”의 딱지가 붙은 이주민들은 특히 값싼 노동자로 이용된다. 사용자들은 그들을 편할 때는 고용하고 불편

할 때는 해고한다. 나가노가 1998년 겨울 올림픽 개최지로 선택된 이후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일거리를 찾아 나가노현에 도착했고 절대적인 노동력의 부족으로 많은 건설 하청업자들은 미등록 일꾼들을 고용했다. 그러나 그 건설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이 이주 노동자들은 경찰에 쫓기고 또 체포되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11월 현재 나가노현 경찰은 미등록 노동자들이 발견될 법한 집이나 다른 장소들을 13차례나 습격 하며 397명의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추방했다 이주민 지원 단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몇 년간 이용해 먹은 후 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저팬타임스지는 다음과 같은 이주민인권보호 운동가와의 인터뷰와 함께 이 문제에 관해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다.

지난 6월 올림픽 시설물들이 모양을 갖춰감에 따라 라밀로드레온의 친구 여섯의 경찰에 의한 보호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탄압 후 갑자기 끝났다. 그 날 이후 필리핀 출신 건설 노동자인 드레온은 또 다른 탄압에 대한 걱정으로 며칠 밤을 뜬눈으로 보냈다. 경찰이 두려워서 그는 일 하러 갈 때만 집을 비우고 아파트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지냈다. “[이주노동자들]은 나가노가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게끔 몇 년 동안 아주 힘들게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순간에 우리의 일은 끝났으며 우리는 장난감처럼 버려졌습니다.”라고 29살의 드레온이 말했다. 그는 12월에 그의 일을 잊었으며 아직 그 달치 임금은 받아야 한다. “경찰은 너무나 기회주의적이었어요. 그들은 일본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공헌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의 끈을 갑자기 조였어요”라고 ‘외국인의 인권을 위한 신슈 네트워크’의 모니카 나카무라가 말했다. 그녀는 “경찰은 이주자들이 현장을 건설하느라 바쁠 때는 그들을 용서하는 듯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체포자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의 많은 외국인들이 엄청난 고독과 경찰의 탄압에 대한 공포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보아야 만 합니다.”라고 많은 외국인들이 지난 여섯 달 동안 도움을 요청하는 정신적 공황의 상태에서 그녀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리며 나카무라는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러한 조치가 우연찮게 많은 외국인들을 포함하긴 했지만 그냥 사회악 일소를 의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체포당한 외국인들의 70.80%가 여성들입니다.”라고 나가노 경찰의 토시오 고미오는 말했다. 하지만 그러한 여성들도 또한 일에 관계된 관료들과 직원들을 접대하면서 간접적으로 올림픽에 공헌했다고 나카무라는 반박했다. “나가노올림픽을 위해 국제적 참여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착취당했는가를 고려해보면 이 말은 매우 공허하게 들린다.

(“나가노 올림픽을 만들고 청소 당할 위기의 불법 외부인들”, 저팬타임스, 1998년 2

월 3일)

무국적 어린이들

갈수록 많은 이주민들이 일본에서의 장기체류를 선택함에 따라 결혼, 이혼, 가정폭력, 어린이 그리고 시민권 등에 관련한 보다 많은 경우가 시의 논의창구뿐만 아니라 비정부 지원단체에 전해지고 있다.

일본인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에 의해 태어나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다. 이 어린이들은 때로 국적이 없다. 정부의 공식적 논평은 등록된 네 살 이하의 무국적 어린이는 1996년말 현재 734명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이 숫자는 등록된 어린이만 얘기하고 있다. 미등록된 어린이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에 다닐만한 어린이에게 있어서는 국적 없이는 학교 들어가기가 힘들다. 무국적 어린이의 어떤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를 학교에 들어가도록 지원할 때 추방당할까 두려워한다.

각 지방 교육위원회는 그러한 지원의 경우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한 관리에 따르면 “지방 교육위원회가 그 판단에 있어 곤란을 겪을 때, 그 위원회는 이민부처에 연락할 것이다. 그리고 추방을 기다리는 동안 어린이들은 원한다면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한다. 일본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무국적 어린이는 많다. 1996년 말 현재 대략 11,000명으로 추산된다.

혐오, 살인 그리고 학대

자살시도나 알려지지 않은 죽음, 폭력, 살인, 강간 그리고 성폭력의 경우들은 이주민 지원 단체들에 전해져왔다. 올해에는 학교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어린이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몇 건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경우는 브라질계 일본 소년의 살인이다.

그의 부모는 브라질로 이주한 일본인의 후손이다. 그 소년은 일본인 조종꾼들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브라질에 간 일본인 후손에 대한 그들의 혐오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12월에 살해당했다.

1997년 3월 우투노미야시에서의 또 다른 경우에는 한 브라질 소년이 급우들에 의한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그는 그에게 “이 역겨운 놈”이라며 언어적 학대를 하고 그의 공책과 연필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몇몇 급우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다. 그는 일본어를 거의 할 줄 몰랐지만 배우는데 열성적이었다. 그런 경우는 일부 표면화된 경우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추정을 한다.

교육생

“교육생” 제도는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한 구조적 산물의 하나이다. 1994년 현재 17,305명의 교육생이 있는데 그 다수인 56%는 중국으로부터 왔고 그 다음은 10%의 필리핀인과 9%의 인도네시아인의 동남아시아인들이다. 작은 회사들은 합법적으로 값싼 비숙련 노동자들을 얻기 위해 이 제도를 활발히 이용한다. 즉 그들의 월급은 평균적으로 661744 달러정도로 낮고 그들은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1997년에 중국인과 인도네시아인 그리고 파키스탄인들에 의한 몇 가지 불만사항들이 지원단체와 법률사무소에 전해졌다. 다른 경우에는 중국 여성 교육생들의 임금의 일부가 모집 담당자로 일한 중국인 공무원에게 지급됐다. 그 노동자들은 한 달 평균 25,000엔을 받았다. 그 여성들이 그런 불만 후 귀국했을 때 그들은 중국 관리에 의해 엄청난 벌금을 징수 당했다.

구치소에서의 폭력

1994년에 한 중국 여성이 이민국 관리에 의해 끔찍하게 얹어맞고 발길질 당하는 사건이 널리 알려진 뒤로도 이민자 구치소에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다.

최근의 경우는 건강들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시쿠 구치소에 구류중이던 45살 먹은 엄마와 74살 먹은 할머니 그리고 1세 7개월 된 아기로 이루어진 한 중국인 가족이 연루된 것이다. 그 아기는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사람들과 단체가 강하게 항의한 후 결국 한시적으로 석방된 후 출생 후 처음으로 바깥 세계를 보았다.

국내 노동자들

국내 노동자로서 여성 이주자들은 사용자들의 손에 전적으로 남겨진 채 일본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대략 3,000명 정도의 국내 노동자들이 간토 지역에서 일한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그들은 일본의 노동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미국 대사관의 관리를 위해 일한 한 필리핀 여성은 한 달에 120,000엔에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해야했으며 실제로는 한 달에 30,000엔만 지급 받았다. 그녀의 외국인등록카드는 물수당했고 그녀는 불평을 할 때마다 협박을 당해야 했다. 그녀는 결국 그 대사관의 외교관에 대항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정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구실로 그녀의 소송을 기각했다. 우리는 이처

럼 법률적 과정을 거치지도 못한 많은 유사한 사건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건이 특이한 사건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최근 매우 유사한 경우가 한 변호사에 의해 보고되었다. 그러나 그 피해자는 그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옹답

1990년 UN의 이주민 노동자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위해 정부는 어떤 진전도 시키지 않았다. 반면에 개정된 이주민법은 이 개정에 반대해 인권단체와 이주민 지원단체들에 의한 전국적 분노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오월부터 강제되기 시작했다. 이 개정은 1996년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불법 이민의 급격한 증가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조항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법무부가 중국인들을 밀수입하는 브로커나 개인들에게 강력한 처벌하거나 불법적으로 일본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돕는” 사람들까지도 처벌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새 법에서는 지원기구들도 기소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전국네트워크 출범

‘이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아이치현에서 열린 이를 동안의 연례 전국포럼(젠코쿠)이 끝난 1997년 4월 29일에 출범하였다. 이주민지원 비정부 기구, 교회단체, 노동조합들과 같은 다양한 단체를 포함하는 새로운 네트워크에 관한 생각은 작년 포럼기간동안 표출되었다. 그리고 그 준비와 실현을 위해 1년이 소요되었다. 전국적 단체를 설립하며 젠코쿠넷은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힘을 부여하고 이주민지원단체들을 연동하는데 힘찬 발걸음이 되었다.

일본 전국의 재야단체와 무역단체를 포함하는 60여개 이상의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네트워크의 현재의 목적은 이주 노동자의 권리와 이민법의 독소조항 삭제, 이주민들을 위한 의료보험 그리고 고용에 있어 여성 이주민, 결혼, 이혼, 폭력, 육아, 거래 등의 보호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한 캠페인과 정부관리와의 협상을 포함한다.

정부에 차별철폐 청원

[이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12월 2일 노동부 앞에서의 첫 번째 공개적 활동을 구성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도록 요구하며 노동부와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에서 한 대표가 노동부가 노동기준법,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제반 관련 입법을 적용할 것을 요

구했다. 그 단체는 또한 노동부가 산업장에서의 재해, 부당한 해고, 임금체불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맞닥뜨리는 다른 문제들을 막기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사용자들의 여권 압류에 대항하여 법정에서 이긴 첫 사례

일본계 브라질인 이주 노동자인 오카다 마나세스와 그의 가족들은 그들의 의지에 반한 여권 압류와 봉급 압류에 관한 이유로 인력회사의 보상을 요구했다. 12월 9일 고베지방법원의 허메지지원은 회사가 원고의 여권반환 요청 이후에도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회사로 하여금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일본에서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최초의 법원의 결정이었으며, 이 사건동안 오카다 가족을 지원했던 단체들은 이 일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좋은 전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OECD보고서-일본 일본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에 관한 원칙 -쿠니에다 마사키 (일본 법무성)

1. 이민 억제, 법안 그리고 원칙

이민에 관한 일본의 법적 근거는 이 문서에서 이민 억제 명령으로 통칭하는 '이민억제과 피난 인정에 관한 명령'(내각 명령 319조, 1951년)과 등록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 등록법 (법령 125조, 1952년)이 발효된 195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민 억제의 책임은 법무성에 있다.

주거 신분 시스템

일본에 입국, 주거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은 '이민 억제 명령'에 근거한 일정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적격여부는 일본에서의 활동 또는 개인적 이유에 따라 판단된다.

적격자는 주거 신분의 27가지 분류중 하나에 합당하여야 하며, 동시에 특정 분야에 서만의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 없이 직장을 가지거나 혹은 사업을 운

영하는 모든 외국인은 법에 의한 처벌을 받고 추방당할수 있다. 대부분의 신분 분류들은 임금을 받는 취업이나 사업 운영(예를 들어 투자자/사업 경영자, 기술자 등)에 관계한다. 특별 범주는 법무성에 의해 특별히 계획된 활동을 허가한다. 일본 국민과의 결혼과같이 개인적 이유에 의해 받은 입국, 주거 허가는 어떤 활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나머지 여행자, 학생, 훈련생과 같은 나머지 범주는 임금을 받는 취업을 금지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원칙

첨단 기술자나, 일본 국민에 의해 제공될수 없는 외국문화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일본 입국, 주거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일본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 오히려 일본 경제와 사회발전에 도움을 준다. 반면에 무숙련 노동자의 입국은 일본산업, 노동, 교육, 복지, 공공 복지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현재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국가적 사회조사 결과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민억제에 대한 기본 계획

최근, 외국인들의 일본 산업, 경제, 사회에 관한 영향을 고려한 이민에 관한 기본적 원칙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따라서, 1989년 개정된 이민조정명령에 기초해 법무성은 이민 규제를 위한 기본틀로서의 '이민 억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첫번째 계획안은 1992년 법무성에 의해 출간되었다.

이 계획은 '외국인의 입국, 주거'와 '이민 억제 기본 원칙'의 두개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후자는 이민에 관한 4개의 중요 세부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체계적인 인력 교환의 향상: 이민 과정과 주거 재심의 합리화와 가속화에 의함

-외국인 노동자 승인 원칙: 숙련된 노동자에 관한 기준은 일본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고찰 된다. 반면, 비숙련 노동자에 관한 기준은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연구될것이다.

-외국인 기술 훈련생: 새로운 체제 확립을 포함한 훈련과정의 효율성 향상에 대해 연구한다. 이는 국제 공조와 개발 도상국들의 발전을 통해 국제 사회에 공헌하기 위

해서이다.(1993년 4월, 새로운 훈련 시스템에 시작되었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인권 수호의 차원에서 엄격한 통제와 절차를 통해 불법 노동 회망 입국자의 입국 차단과 불법 고용을 적발해낸다.

현재 이민에 관한 원칙들

1994년 4월 숙련 노동자 허가 기준에 관한 변화가 있었다. 외국 요리와 건축을 포함한 숙련 노동자의 기준 6개의 범주에 3가지가 추가되었다. 지구 열학 에너제 개발을 위한 현지 탐험(해저 탐험은 이미 포함), 대형 항공사의 기장, 그리고 스포츠 교육(기존에 다른 범주에 포함)이 그것이다. 국제 학교의 교사에 관한 몇 가지 기준들은 완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생학 분야의 전문성도 공공 건강 간호사와 조산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해 의료 서비스 범주에 포함되었다.

'기술 수련 교육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인력자원 증대와 일본의 경제 발전의 공유라는 목적에서 1993년 4월에 만들어졌다. 일정기간 훈련결과의 평가로 수련과정으로의 이동여부가 결정된다. 수련생 지원자들이 어느 정도 기준의 기술적 잠재력을 인정받으면, 지속적으로 실용적인 기술적 전문성과 전문 기술을 익힐수 있는 훈련 회사에 취업할수 있다. 훈련과 수련 기간은 2년 이상이 될수 없다. 그리고 수련기간은 훈련기간의 1.5배를 넘을수 없다. 최초의 기술 수련과정은 1993년 9월에 계획되었다.

1994년 1500명 가량의 훈련생들이 기술 수련 교육 프로그램에 받아들여졌다. 그들 모두가 훈련 결과를 평가하는 시험에 합격했으며, 일본에서의 생활방식 역시 고려되어졌다. 대부분은 중국인(866)이었으며, 인도네시아(489), 필리핀(66), 태국(30), 그리고 나머지 국가(41)의 순으로 모두 아시아인들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기술의 수는 17종에서 47종으로 늘어났다.

2. 최근의 합법적 이민

외국인 일본입국자 수의 변화

일본이 이민을 허용하지 않은 이후로 외국인의 유입 지수를 알수 있는 방법은 일본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의 수뿐이다.

1993년 약 3백만명의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했으며(70만명의 재입국자 미포함), 이는

1988년에 비해 55%의 감소치이나 1992년과 비교해 20만명(7%)이 줄어든것이다. 이것은 7년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나타낸것이며, 근래 일본 경제의 침체와 일본 엔화의 급등에 의한것으로 보여진다.

표1. 직종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 | 1990 | 1991 | 1992 | 1993 |
|------------|-------|--------|--------|-------|
| 예술가 | 1202 | 52 | 40 | 95 |
| 종교활동 | 1958 | 2073 | 2015 | 1755 |
| 언론인 | 410 | 401 | 283 | 255 |
| 투자가와 경영자 | 3807 | 1523 | 1388 | 1026 |
| 법률, 회계 서비스 | 42 | 7 | 7 | 4 |
| 의료 | 72 | 4 | 4 | 3 |
| 연구 | 458 | 823 | 860 | 812 |
| 교수 | 591 | 750 | 843 | 1045 |
| 교사 | 4092 | 2651 | 2573 | 2635 |
| 기술자 | 1338 | 3166 | 2979 | 1758 |
| 인문, 국제 전문가 | 2756 | 6416 | 5703 | 5265 |
| 기업 주재원 | 1540 | 3780 | 4639 | 4438 |
| 기타 | 1510 | 2381 | 2441 | 1768 |
| 유통업 | 75091 | 89572 | 84368 | 76242 |
| 합계 | 94868 | 113599 | 108143 | 97101 |

1993년 아시아 입국자들은 전체 2백만명의 65% 1988년과 비교해 82%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역시 평균이상이었다. 따라서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사이의 관계가 두터워진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는 대한민국(760,000), 타이페이(640,000), 미국(480,000)의 순이었다. 1988년과 비교해 한국인의 수는 타이페이, 태국인 수의 3배 증가했다. 홍콩과 중국인의 수는 말레이지아인의 약간의 감소에 비해 40%증가했다.

외국인 입국자의 92%이상이 관광객이었으며, 겨우 10만명(3%)이 취업허가를 받았고 (대사관, 관공서, 그리고 취업의 규제가 없는 사람은 제외) 그중의 반이상(55000)이 아시아인들이었다.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필리핀인들은 '유홍업'으로 많이 일본에 입국하였다. 중국인들은 주로 기술자나 숙련노동자였으며, 한국인들은 주로 주재원이었다. 대부분의 숙련노동자들은 아시아인들이었다. 학교의 학생과 훈련생 또는 기업가의 수는 약 69,000명이었으며, 또다시 다수(86%)는 아시아인들이었다. 1990년에서 1993년 사이 직업분류에 의한 유입수의 변화는 표 1에 나와있다.

외국인 인구의 현황

일본에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일부 예외)은 '외국인 등록법'에 따라, 그리고 일본 내 외국인 수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반드시 등록을 해야한다. 1993년, 130만명의 외국인(전체 인구의 1%를 약간 넘는)이 등록, 1988년에 비해 40%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00만명 이상이 아시아인(78%), 다음이 남미의 20만(15%)이다. 1988년의 16만이었던 데 비해 아시아 인구가 증가했지만, 이것은 아시아 인구의 유입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이것은 1988년 이전의 비교적 높은 수치의 등록율과 5000에서 10000의 한국인과 중국인이 1988년 이후 매년 귀화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거주자의 반정도가 한국인과 북한인이다. 그들의 수는 약 68만명 정도로 안정적이나 중국, 브라질, 필리핀, 페루인등의 나머지 주요 국가의 국적 소유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2)

거의 반정도의 등록된 외국인들은 영구 거주자이나, 그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들중 53800명은 특별 영구 거주자이며, 48000명은 일반 영구 거주자들이다. 1993년 말, 외국인의 수는 그전해에 비해 12%가 증가했다. 이것은 1988년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인데, 이는 1989년의 이민 규제 명령의 개정이 기술자와 인정 받는 기술의 범주가 넓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요 구직 허가의 종류는 표3에 나타나있다.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은 필리핀(26000이상), 중국인(20000), 그리고 한국인(6000)이다.

졸업 후 외국 학생들의 취업

대부분의 등록된 외국인들은 입국시 취업허가서를 받게되나, 일부는(대체로 학생) 그

들의 체재중 취업허가서를 받는다. 외국인 대학생들은 그들이 일본에서 습득한 지식을 그들의 국가에서 이용할수 있기를 희망하나, 일부분은 그들의 기술적 전문성과 지식을 졸업후 일본에서의 직장경험을 통해 향상시킬수 있기를 원한다. 일부 일본 기업들은 전문 기술 또는 지식,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국가와 일본 양국 사회에 익숙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을 고용하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졸업하는 외국 대학생들에게 주거 지위 변경 신청을 이민 규제 법안에 의거해 허가하고 있다.

1993년 2300명의 신청자중 90%이상이 허가되었다. 허가된 사람중 95%가 아시아 사람이다. 주로 중국(1400), 한국(220), 중국계 타이페이와 말레이지아가 그들의 국가이며 반이상이 인문/국제 관계 전문가로 분류되며 나머지 1/3은 기술자이다.

3. 불법 이민 현황

불법 이민자들은 보통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일본국민과의 위장결혼을 한 사람, 그리고 바다를 통해 밀입국한 외국인들이다.

불법 장기 체류자

1993년 5월, 일본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은 299000으로 추산되며, 1990년 7월이후 10600의 증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동경지역 이민국의 특별조사팀과 같은 더욱 엄격한 규제로 5000명 정도의 숫자가 1년후 감소한것으로 추산된다.

국적별 불법 장기 체류자는 표4에 나와있다. 1990년 이후, 페루, 이란, 대만, 중국, 한국, 말레이지아, 그리고 필리핀에서 온 불법 장기 체류자의 대략적 수치는 증가해왔다. 그러나 최근 말레이지아, 이란, 대만에서온 사람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남자(18만)의 수가 여자(11만 4천)보다 많으나, 그 수는 1992년 이래 감소하고 여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들은 임시비자(22만 7천, 77%)로 입국하였으며, 그다음은 대학 입학희망자(2만4천), 유홍업관계자(9천) 그리고 대학생(8천)등이다. 불법 장기 체류자들의 실질적인 파악은 힘들지만, 대부분이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입국

1989년과 1990년, 일본에 불법입국후 구급된 외국인의 수는 중국인 유입의 급격한 증가의 결과로 2300명에 달한다. 이것은 1988년의 600명에 비해 괄목할만한 증가세이다. 1991년의 약간의 감소이후 그 수는 다시 1993년 5000명에 달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 특히 대만과 필리핀 사람들이 위조된 여행증명서로 입국에 성공하고 있으며 다른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과 베트나인들이 일본에서의 취업을 위해 숨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불법입국

제 2차 세계대전이후, 지리적 거리와 일본내 한국인 공동체의 존재, 그리고 두나라사이의 발전 속도의 차이등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일본의 불법입국을 계속해왔다. 한국 경제발전과 1989년의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라 한국인의 불법입국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1993년 154명의 한국인 구속은 여행자유화에도 불구하고 배를 통한 불법입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에서의 불법입국

1989년 5월과 1990년 2월사이 2830명의 보트피플을 실은 23척의 배가 나가사키, 쿠마모토, 카고시마, 오키나와 그리고 시마네주위를 떠다녔다. 이민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중국의 후지안 지방의 농장에서 일하던 중국인과(또는) 베트남인들로서 인도차이나 보트피플을 가장해 일본에 불법 입국을 하려던 사람들이었다. 16명의 실종자를 제외한 모두가 중국 정부와의 협상으로 중국에 송환되었다.

이러한 유입의 이유는 중국 경제의 자유화로 인해 생활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학생들에 의해 일본에서의 취업이 쉽고 1달 월급이 중국의 1년치와 같다는 루머가 중국에 퍼지고 있다. 또한 망명자들이 일본에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오해도 있는 듯하다. 현재 여권 획득의 어려움과 일본 대학 입학 희망자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중국에서의 일본으로의 중국 출국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들은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종결되었다.

1989년 말경 난민을 가장한 중국인의 유입은 중단되었고 대신 화물선을 통한 입국시도는 1989년에 5건, 1990년 7건, 그리고 1991년 13건이 있었다.

1990년 10월, 19명의 어선에 타고있던 18명의 중국인 밀항자가 일본입국을 시도하다가 구속되었다. 그이후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며 1991년 4건(112명 승선), 1992년(377명 승선), 1993년 4건(326명 성선) 그리고 그외의 386명의 중국인이 승선한 5척의 배들이 1994년 9월 말에 있었다. 배를 통한 밀항은 꾸준한 증가세인것으로 보인다. 바다에서 배를 바꿔 타는 등의 조직적 행동이나 일본 쟁들이 연관된 사건들 역시 조명을 받고 있다.

불법 이민을 알선하던 '스네이크 헤드'라는 국제 조직이 이러한 케이스들의 대부분과 연관된것이 밝혀졌다. 스네이크 헤드의 활동은 주로 중국, 홍콩 그리고 타이페이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여러가지 활동, 예를들어 모집, 진행, 일본에서 불법 입국자들의 인도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밀입국에 대항하기 위해 법무성은 국제 경찰 조직과 해안 경비대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이러한 국가들에 불법 입국자들의 유출을 규제해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타 국가에서의 불법입국

1991년 5월과 10월 사이 362명을 실은 9척의 배들이 일본 해안을 떠다녔다. 이들은 베트남으로의 송환을 피하기위해 홍콩 난민 수용소를 탈출한 사람들로 밝혀졌다. 이들은 일본정부가 홍콩 정부와 그들의 송환을 협상하고 송환절차를 시작하기 전까지 억류되어있었다. 그러나 홍콩정부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994년 9월말 그중의 195명이 자발적으로 베트남에 돌아갔다.

베트남 정치 상황의 안정으로 소수의 베트남 보트피플이 1991년과 1992년 일본에 도착했으나 1993년에는 일본에서의 취업이 허가될것이라는 루머로 인해 그 수가 64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수는 베트남 일본 대사관이 광고를 통해 일본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8명의 베트남 밀항자들이 1994년 9월 말 발각되었다.

다른 불법입국방법, 특히 타이인들에게 위조 혹은 변조된 여행증명이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케이스의 증가는 브로커를 통해 위조 여권과 위조 비자를 구하기가 쉽기때문이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있거나 여행 증명서를 합법적으로 획득하는데 실패한 사람

들은 대부분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다.

불법취업

1993년의 이민규제명령의 위반은 표5에 나타나 있다. 주요 분류는 불법 체류기간 연장으로 전체의 90%이다. 타이인들과 필리핀인들의 위조여권사용과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보트피플의 결과로 불법입국은 그전해에 비해 51%증가했다. 더구나 배를 통해 일본에 불법 입국하는 중국인의 수도 늘고 있다.

1993년 추방당한 수는 64,340명이며 1988년에 비해 4.5배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1993년, 2/3의 전체 불법 취업자들은 태국(12,600), 말레이지아, 한국 그리고 이란에서 왔다. 이는 1988년의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대만에서 대부분의 불법 입국자들이 온것과 달라진 것이다. 1993년 불법취업한 태국인의 숫자는 나머지 3개국의 숫자가 감소하는데 비해 증가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5000명에 달하는 불법취업자 수의 급격한 증가가 지난 5년간 이루어졌고, 불법취업자의 국적은 1993년 90개국과 같이 다양화되고 있다.

1988년 이후 불법 취업자는 대체로 남자였다. 1993년 남자대 여자의 수는 45000과 19000이었다. 대부분은 35세이하로 25-30세 사이가 29%, 30-35세 사이가 22%, 20-25세 사이가 19%였다.

1993년의 조사에 따르면 추방된 남성들은 대부분 건설노동자(45%)나 공장 노동자(32%)였고, 여성들은 접대부(37%), 공장 노동자(18%), 창녀(10%)등이었다. 최근 추방자들의 직업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접대부가 줄어들고 공장노동자가 늘고 있다. 매춘업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것은 사화적 그리고 공공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4. 불법 이민에 대한 대응책

강력화되는 입국 규제

일본은 이민 조사관 수의 증가와 여행자를 가장한 불법취업자를 적발해내기 위한 위조 문서 식별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1993년 만 9천명이 외국인이 입국을 거부당했고 이는 1988년에 비해 70%가 증가된 것이나 1992년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1992년 4월, 이란의 3개월 이하 임시 체류비자를 유예시켰고 1993년 6월 이후 말레이지아 인들은 일본에 관광객으로 입국전 비자를 발급받도록 되었다. 일본 정부는 타이정부에 타이 국민이 일본 불법 취업을 시도하지 말도록 알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입국 규제 강화는 잠재적 불법 취업자의 형성을 막고 있다.

1993년, 입국 거절의 수는 한국 3000, 태국 2700, 말레이지아 2300, 필리핀 1600, 페루 1500등이다. 1993년 이 순서는 1988년과 비교해 달라졌는데 이는 1989년 1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3개월 이하 임시 방문비자의 폐지때문이다. 1993년의 순서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한국, 태국, 그리고 말레이지아이다.

불법입국과 취업을 위한 방법은 더욱더 기술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항공사 관계자나 UN의 관계자로 가장한다. 따라서 공항과 항구에서의 입국과 출국심사는 세밀해지고, 이유없는 지체를 막기위해 효과적이 될수 밖에 없다.

엄격해지는 장기체류 규제

이민 규제 명령을 위반, 추방당한 외국인들은 초기의 7만명을 초과하는 70400였다. 정부는 강력 규제 기간의 도입, 철저한 규제를 위한 특별 조직의 구축, 규제 관련 공무원수의 증가등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993년 추방자 수는 1988년의 52550명에 비해 증가한 것이며 1988년의 4배이다. 그러나 1994년 5월 30만명의 장기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아직 불완전한것이며 더욱더 강력한 규제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불법 고용자들에 대한 대응책

급격히 늘어나는 불법외국인 취업자들에 대응하기 위해 1989년 개정된 이민 규제 명령은 고용자와 중개인등 불법 취업자를 데려오거나 일본에서 고용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1990년 개정 법안의 발효이후 1990년 54명(41건), 1991년 306명(242건), 1993년 777명(692명)이 구속되었다. 노동자 파견법 또는 직장 보호법을 적용하기 위해 일본은 부패한 고용자, 중개인 그리고 불법 취업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907명(806건)이 이러한 법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993년 이후 정부는 매년 6월을 '외국인 노동자 문제 자각의 달'로 정해 불법 취업을 막고 외국인들의 합법적 취업을 격려하고 있다.

다른 관계기관과의 공조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한 정부 연락 회의(17개 부서와 기관이 참가)가 1988년 이후 관계기관들이 공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3년 1월, 연락회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법무성, 노동성 그리고 국가 경찰 기관은 1992년 2월이후 외국인 불법 취업자에 대한 규제를 의논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수준의 공조체제를 수립했다. 불법 취업자에 대해 특히 법무성과 경찰이 같이 협력하고 있으며 공조 체제는 국가 기관사이에 지속적으로 재강화될 것이다.

국제적 협력

국제 협력체제는 인구의 대규모 국제이동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한 정보의 교환을 위해 증진되고 있다. 1987년 이래 법무성은 동남아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기타국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이민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매년 국제 이민 세미나를 열고 있다.

언급한것과 같이 국제 협력 체제속에서 일본정부는 말레이지아, 중국, 태국정부에 그들 국민들의 일본으로의 불법 입국을 규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여권, 비자등 위조 문서에 대한 정보가 일본내 이들 국가들의 대사관사이에 교환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은 불법 국제 범죄를 막기위해 강력화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이주노동자- AMY YEARBOOK 98'

개요

말레이시아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중 하나이다. 신홍산업국(NICs) 모델을 따라, 1970년대 '신경제정책'을 바탕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세계 3대 반도체 생산국과 10대 가전제품 수출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많은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였으며, 수출에 기반을 둔 산업화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8년간 평균 8%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987년부터 1993년 사이에 년 3.9%의 비율로 1400만 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게 되었다.

이주민 노동자

'신경제정책'이 구체화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은 급속도로 상승하였다. 동시에 농장과 같은 3D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상승을 막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결국 말레이시아 정부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허가하게 되었다. 게다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중산층과 여성 고용의 증가하게 되어, 가사 노동을 담당할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세계은행은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노동자가 매년 17,000여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얼마 후에는 국내 총 노동인구 6명당 외국인 노동자 1명의 비율로까지 증가할 것이다.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지에서 온 약 300만명의 이주민 노동자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수입하는 국가인 동시에,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으로 노동자를 수출하고 있기도 하다.

쟁점

경제성장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며 그들의